

#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김 건 태\*\*

1. 서론
2. 동중 수입
3. 부세 상납
4. 잡세 및 인정료 지출
5. 동내 지출
6. 결론

## 1. 서론

조선시대에는 마을을 의미하는 한자로 민간에서는 里, 洞, 村 등을 혼용했고, 정부는 里와 洞을 주로 썼다. 그런데 정부는 里와 洞의 '格'을 달리했다. 주지하듯이 조선은 건국 이후 면리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17세기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면'은 행정단위가 아니라 里가 위치한 방위만 가리킬 뿐이었다. 17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면이 행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호적과 양안이 면 단위로 작성된 데서 확인된다.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대체로 이전의 里가 면으로 승격하고 면 아래 새로운 里가 생겼다. 군현-면-리체제가 정착되면서 그 이전보다 里의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里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장[마을]보다 넓은 영역이었다. 예컨대,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의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9세기까지도 호적대장의 리는 몇 개 동을 합쳐서 만든 것이었다. 생활의 장인 마을은 1896년 신호적 단계에서 공식적인 행정단위[洞]로 자리 잡는다. 신호적 단계부터 군현-면-리-동 체제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동 또한 생활의 장인 마을이다.

이같이 19세기 말이 되어야 洞이 독립적인 행정단위가 되지만 부세행정에서는 그 이전부터 독립된 단위로 그 역할을 해왔다. 일부 부세의 부과·수취가 동 단위의 공동납체제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선전기까지 이념적으로 볼 때 田稅는 중앙정부[국왕]가 전답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수취하고 수령은 그 과정을 지원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중앙에서 부과한다고 해서 전세를 公稅라 여겼다. 그에 비해 공물은 중앙정부가 수령에게 부과하면 수령이 戶에 부과·수취하여 상납하였다. 인민들은 지방에서 부과한다고 해서 공물을 私稅라 여겼다. 그런데 대동법 시행 이후 전결세가 군현을 단위로 하는 총액제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군현이 그 부과·수취의 주체가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군포, 환곡, 진상, 요역 등과 같은 인두세[戶나 人에게 부과]의 부과·수취 주체도 군현이 되었다.

주지하듯이 전결세 부과와 수취는 대한제국기까지도 여전히 '개인납체제'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공동납 대상은 호나 인 단위로 부과되는 인두세에 한했다. 예컨대, 19세기 구례현과 임실현은 동단위의 공동납체제에 의거해 군포를 부과·징수했다.<sup>1)</sup> 그리고 거제 舊助羅里는 각종 進上和 雜役 부과에 공동납으로 대응했다.<sup>2)</sup> 19세기 동래부 또한 각종 잡역을 동단위 공동납으로 마련토록 했다.<sup>3)</sup> 공동납이 활성화되면서 面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했고,<sup>4)</sup> 응세조직적 성격을 갖는 동계가 이곳저곳에서 생겨났다.<sup>5)</sup> 그리고 동계의 활성화로 마을자치

1) 이종범, 1993 『19세기 후반 호포법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동방학지』 77·78·79합집: 송양섭, 1995 『균역법 시행 이후 균역제 추이와 동포제의 운영』 『군사』 31.

2) 전민영, 2016 『18세기말~19세기 해촌의 공동납운영방식』 『고문서연구』 48; 전민영, 2017 『19세기 舊助羅里 마을 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송양섭, 2021 『19~20세기 초 거제 구조라리의 洞中과 洞錢운영』 『한국문화』 94.

3)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面中)'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4) 송양섭, 위의 글.

5)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가 진작되었다.<sup>6)</sup>

선행 연구로 공동납의 부과·징수 과정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부세를 직접 마련·납부하는 마을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실상을 밝히는 것이 본 글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공동납의 활성화로 진작된 마을 자치의 성격을 비교사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세 유럽 장원과 에도시대 일본 무라[村]의 자치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둔다. 장원회의에서는 부세의 공동납과 관련된 일에 더하여 농사에 관한 것도 논의·결정했다. 장원회의는 파종할 곡종, 파종 일정, 제초 일정, 추수 일정을 결정했다.<sup>7)</sup> 즉 개인이 임의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무라회의 또한 부세의 공동납뿐만 아니라 농사 일정에 대한 것도 논의했다. 휴식일을 村規로 정하는 무라도 있었다.<sup>8)</sup> 촌락 스스로 근면을 독려한 결과 일본은 18세기에 근면혁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sup>9)</sup> 이같이 장원과 무라는 분배[부세납부]뿐만 아니라 생산[농사]와 관련된 부분까지 자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는 19세기 후반 전라도 장흥부 南下面 茅山洞을 주목하고자 한다.

## 2. 동중 수입

### 1) 동내 수입

#### (1) 동내 수합

모산동은 19세기 전반까지 남면에 속했으나 19세기 후반 남면이 남상면과 남

---

박사학위논문.

6) 윤해동, 2006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이용기, 2017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

7) 마르크 블로크(이기영 옮김), 2002 『서양의 장원제』, 까치; 마르크 블로크(이기영 옮김), 2007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 나남.

8) 水本邦彦, 2015 『村』, 岩波新書.

9) 하야미 아키라(조성원·정안기 옮김), 2006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혜안.

하면으로 분리됨으로써 후자에 속하게 되었다.<sup>10)</sup> 모산동 공동납의 실상을 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 1: 『洞中烟下記』 (1854~1859년)

자료 2: 『洞中年下記』 (1869~1873년)

자료 3: 『洞中年下記』 (1874~1976년)

자료<sup>11)</sup> 1·2는 공동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중복 정리하기도 했다. 자료 3은 앞부분이 일부 낙장되어 題名을 알 수 없고 1876년부터 완전하게 남아있다. 자료 3은 앞의 두 자료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공동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주로 자료 1·2에 의존하고, 공동납의 추이(통계처리)는 1876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동내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항목은 동민들로부터 수합한 재화이다 (<표 1> 참조). 수입은 錢, 租, 米, 秬 4종이고, 그 대부분은 錢이다. 곡물은 작전가로 환산했을 때 전체 수입의 1.4%에 불과하다.<sup>12)</sup> 참고로 모산동 자료에는 다양한 作錢例가 등장한다. 1858년 연하기에는 조, 미 각각 4종류의 작전례가 등장하는데, 1석당 조 1.28냥~4냥, 미 3.18냥~10냥이다.<sup>13)</sup> 그리고 동중과 동계에서 동일한 租를 작전할 때 그 작전례가 다른 경우도 있다.<sup>14)</sup> 여기서는 1882년

10) 모산동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글 참조. 이용기, 앞의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김건태, 2019 『조선 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11) 모산동 연하기는 교원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수집한 것이다. 연하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김경숙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애써 수집한 자료를 흔쾌히 넘겨주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준 두 교수에게 감사한다.

12) 錢 8591.21兩, 租 304.6斗, 米 28.32斗, 秬 94斗이고, 곡물을 당해 연도 작전가를 적용하여 전으로 환산하면 324.07兩이 된다.

13)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① 1兩2錢8分租1石價 - 석당 1.28兩, 4월16일 (租)13斗折價1兩4分, - 석당 1.6兩, 1兩1錢租還13斗1升9合 - 석당 1.67兩, 租1石價4兩 - 석당 4兩 ② 6兩3錢6分米2石價 - 석당 3.18兩, 8兩5錢6分米2石10斗價 - 석당 3.42兩, 米4斗2升價2兩 - 석당 9.52兩, 米6斗價3兩 - 석당 10兩. 원자료에는 숫자가 한글로 적혀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이하 동.

14) 作錢例는 다음에서 보듯이 주체에 따라 다르다. 『洞中年下記』 丙戌年(1886) 2月, 以上

〈표 1〉 동중 수입 내역

(단위: 냥)

성격 지역	收合	契錢	運役	地代	其他	合計
洞內	3552.21	1807.72	1598.60	1125.02	705.49	8789.04
(%)	40.4	20.6	18.2	12.8	8.0	100
洞外		66.76			59.48	126.24
(%)		52.9			47.1	100

이후에는 『洞契傳掌記』 동계답 작전례를 적용했다. 동중 연하기의 작전례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편 1881년까지는 『洞中年下記』(이하 연하기로 칭함) 작전례를 적용했다.

동중은 還穀[租還, 米還, 錢還, 牟還, 太還], 軍布[洞布, 戶布, 後木, 後錢], 別備米 등과 같은 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동민들로부터 많은 재화를 수합하였다. 동중은 대체로 봄, 가을로 나누어 부세납부용 재원을 수합했는데, 이때 結斂과 戶斂을 적절히 혼합했다. 환곡 납부용 재원[還財]을 마련할 때 결렴을 하기도 했다. 1858년 10월 환곡 납부용[還財]으로 34명이 경작하던 241.5두락에서 미, 조, 태를 수합하였다. 이때 거둔 곡물은 미 106.48두(1두락당 0.45두), 조 24.15두(1두락당 0.1두), 태 5.3두(5두락 미만 1승, 그 이상 2승)이다.<sup>15)</sup> 그런데 동중은 환재를 수합할 때 일부 경작자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두락을 경작하던 金道玉이 그 예이다. 단지 그의 경작지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환재 수합 대상자 34명 가운데 김도옥보다 적은 경작지를 가진 동민도 다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1858년 10월 수합한 환재는 臥還 납부용이었다. 즉 34명이 그들의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환곡을 현물로 분급받은 다음 본곡에 이자를 더해 동중에 납부한 것이

〔洞契留置〕 禾谷2石3斗內 10斗空需食床下 1石3斗逢賊 在租10斗價4兩; 『洞契傳掌記』 丙戌年(1886) 2月, 以上[洞契畚地代] 租2石3斗 斗量縮11斗 實1石12斗價8兩洞用下. 두 장부에 나오는 租 2石3斗는 동계에서 수취한 동계답 지대이다. 그런데 두 장부의 2월 작전가는 석당 8兩과 5兩으로 크게 차이 난다. 본 글에서 1882년 이후는 『洞契傳掌記』의 계답 지대 작전례를 적용했고, 그 이전은 『洞中年下記』 작전례를 적용했다.

15)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戊午十月 日還財分排記』.

아니다. 동중은 34명에게 현물을 지급하지 않고, 환재를 수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당시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58년 봄 모산동은 장흥부에서 還穀으로 조 11석을 받아와서 개인에게 분급했는데, 이때 1석 혹은 2석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sup>16)</sup>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같은 해 10월 동중이 수합한 조는 모두 24.15두에 불과하고, 가장 많이 상납한 사람의 조가 2.35두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봄과 가을의 곡물양이 크게 다른데, 이는 양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중은 10월 환재수합과 관련된 대상을 주로 宅號로 정리했고 봄 환곡분급과 관련된 내용은 이름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양자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동중은 환곡납부를 위해 호령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동중은 1874년 1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sup>17)</sup> 18명으로부터 還財米 68.27두를 수합했는데, 이때 사람에게 따라 적게는 0.75두 많게는 21두를 거두었다. 1858년 결령을 통해 와환용 환재를 수합할 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액도 많고 거액을 납부한 개인도 다수다. 이는 18명이 그 전해 봄에 분급받았던 현물예다 그 이자를 합해 동중에 납부했음을 의미한다. 동중은 이들을 還戶라 칭했다.<sup>18)</sup>

환곡의 일종<sup>19)</sup>인 別備米 납부용 재원을 마련할 때도 결령을 했다. 예컨대, 1869년 別備米를 납부하기 위해 39명으로부터 미 108두를 수합하였다. 동민들이 납부한 별비미량은 1858년 와환용 재원을 마련할 때처럼 그들의 경작면적에 비례했던 것이다. 이때 수합한 액수는 당초 계획보다 적었다. 애초에는 36명이 경작하던 292.7두락에서 133.69두(두락당 0.45두), 경작지가 없는 3명으로부터 1두를 수합할 예정이었다.<sup>20)</sup>

16)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邑倉租還11石內 2石作錢 1石秋後以本色納上之意慶實持去 2石亦以此意尹聖舉持去; 4月 16日, 13斗折價1兩4分士賢持去 同日 5斗折價4錢賣金持去.

17) 『洞中年下記』 甲戌年(1874), 1월 29일, 2월 8·9·11·14·15·19·23일, 3월 4·6·23·24일.

18)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正月 日, 3兩減還戶事下.

19) 『洞中年下記』 辛未年(1781), 別備還餘米25斗.

20) 『己巳二月二十四日別備米分排記』에는 “合302斗7升落 每斗落4升5合 分排米合130斗5升8合 實90斗口口”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에게 분급한 양과 수합한 양을 합산해 보면 이 숫자와 약간 다르다.

한편 동중은 軍布 납부명목으로 많은 돈을 수합했다. 군포가 인두세임을 감안 하면 호령을 통해 軍布價를 수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 즉 연하기는 호령을 할 때 모든 호를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호마다 동일한 액수를 수합했는지 아니면 호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 (2) 계전 획류

모산동 계는 1881년 한번 정리되었다. 亡結契와 繡查錢[契]<sup>21)</sup>이 동계로 통합되고, 그 이후 다른 몇 종의 계가 신설되었다. 1881년 이후 계전을 동중으로 이전[劃留, 洞用下]한 모산동 계는 1902년까지는 2종, 1903년 4종, 1905년 5종, 1906년 이후 4종이다. 그런데 이 중 3종의 계 자료만 현존한다. 동계는 1865년부터, 정자계는 1891년부터, 상부계는 1902년부터 계전 일부를 동중으로 이전하였다. 개별 계의 강신[연말 총회] 때 계전을 동중으로 이전하면 동중은 그 이듬해 연하기에 그 돈을 計上하였다. 예컨대, 동계는 1894년 11월 20일 강신 때 22냥 9전을 동용으로 留置하였고, 동중은 1895년 연하기에 그 돈을 計上하였다.<sup>22)</sup> 위 3종 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동중으로 이전한 액수가 압도적 비중을 점한다. 모산동에서 각종 목적계를 창설한 목적은 동중경비를 마련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sup>23)</sup>

### (3) 운력전 징수

연하기는 運役으로 쓰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運力으로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운력으로 쓰기로 한다. 운력은 공동노동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장흥지역 사람들은 ‘울력’으로 읽는다.<sup>24)</sup> 운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農軍으로 지칭했는데,<sup>25)</sup> 여

21) 『洞中年下記』 丁丑年(1871) 1月, 春等 繡查契利錢 8兩4錢 繡查契 崔興福 本錢 1兩. 모산동은 문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繡查錢으로 표기했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契’와 ‘錢’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1893년까지는 동계에서 동중으로 계전을 이전하면 동중은 당해 연도 『洞中年下記』에 계상하였다.

23)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24)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25) 『洞中年下記』 丙戌年(1886) 2月, 農軍除草錢2兩9錢.

기서는 윤력군으로 칭하기로 한다. 아래 소개된 1858년 자료를 통해 윤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오 2월 일

運役錢 4냥4전내 希文 8전 …… 文賢 9전, 贊瑞 4전, 聖章 2냥3전.

未到記 杏園宅 2전, 平邨宅 1전, 平化宅 1전, 道先 1전, 小者 1전, 擇邨宅 3전, 富亭宅 1전, 傍村宅 1전, 當村宅 2전, 新村宅 1전, 院等宅 1전, 石門宅 1전, 南外宅 1전, 獨談 1전, 平化宅 1전, 會寧宅 1전, 營田宅 2전, 冬栢宅 2전, 合錢2냥4전 都合6냥8전.

무오 7월 초10일 運役記

聖章 24명 2냥4전, 允賢 6명 4전8푼, 希文 6명 4전8푼, 當邨宅 8푼, 富亭宅 8푼, 墻內宅 8푼, 新邨宅 8푼, 南外宅 8푼, 冬栢宅 8푼, 小者 8푼, 獨談 8푼, 平化宅 8푼, 合錢 7전2푼, 都合錢 4냥8푼.

1858(무오)년에는 2월과 7월에 윤력전을 받았다. 동중이 수취한 윤력전은 ‘윤력전’과 未到錢으로 구분된다(〈표 2〉 참조). 윤력군 4명(聖章, 文賢, 希文, 贊瑞)이 2월에 낸 돈은 일손이 부족한 집의 땀값[柴草]을 해주고 받은 貫錢[임금]이고, 윤력군 3명(聖章, 允賢, 希文)이 7월에 납부한 돈은 일손이 부족한 집의 모내기 또는 제초작업을 해주고 받은 임금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도전[궐전]은 동중에서 주관하는 윤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납부한 돈이다. 장흥지역 여타 마을에서도 공동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중에서 가끔 윤력을 주관했는데, 이때에는 매 戶마다 남정 1인이 일하러 나갔고, 남정을 내지 못하는 집에서는 궐전을 납부했다.<sup>26)</sup> 미도전은 동중이 주관하는 윤력에 참여하지 못한 집에서 징수한 돈으로 보인다. 미도전을 납부한 사람은 冬栢宅처럼 택호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2월 15명, 7월 7명)이고, 獨談처럼 이름을 쓴 사람은 소수(2월 3명, 7월 2명)이다. 택호를 쓰는 마을 上民들은 윤력이 있으면 직접 나가지 않고 세전으로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26)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표 2〉 1858년 윤력전 내역

(단위: 인)

성격 지역	運役錢						未到錢			
	24전	23전	9전	8전	4.8전	4전	3전	2전	1전	0.8전
2월		1	1	1		1	1	4	13	
7월	1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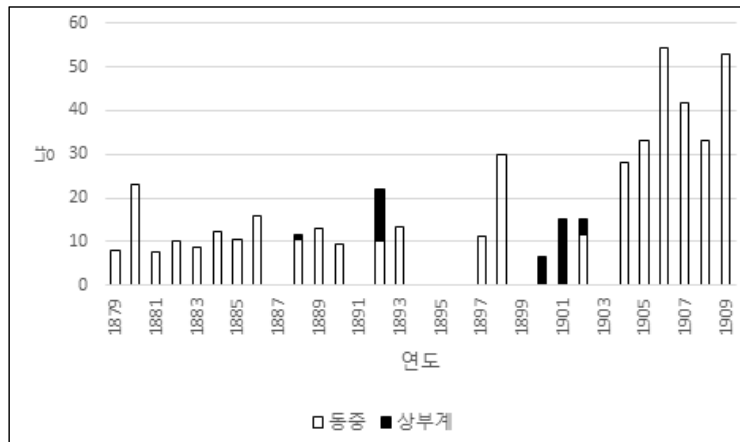
한편 2월과 7월 윤력전으로 많은 돈을 상납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당시 윤력을 감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에는 이양 때 10여 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27)</sup> 즉 이들은 윤력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임원[座上, 執綱, 公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위 7월 기록을 보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예컨대, 성장은 윤력전 2냥4전을 동중에 상납했는데, 동중은 이 돈이 24명분임을 밝혀두고 있다. 많은 돈을 상납한 윤현과 希文도 임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윤력 작업량에 따라 동원되는 인원 수도 달랐는데, 개별 윤력 때마다 조직의 임원들이 작업과정도 지도하고 세전도 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력군들이 동중에 상납한 액수를 보면 개별 윤력군들의 1~2일 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 이양, 제초 작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동중에 상납한 돈은 그들이 받은 세전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마을 단위로 조직된 윤력군[農社, 農契]들은 통상 참가한 날짜를 따져 임금의 대부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일부를 동중이나 동계에 상납하였다.<sup>28)</sup>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후반 모산동에서도 확인된다. 윤력군들은 동중뿐만 아니라 喪贖契에도 농사와 관련된 윤력전을 상납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윤력전의 성격이 불분명한 몇 년<sup>29)</sup> 치가 그림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동중과 상부계는 매년 윤력전을 징수한 것은 아니다.

27) 김건태, 2012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역사비평』 101.

28) 豊田重一, 1917 『農社農樂に關する』 『朝鮮彙報』 4월호; 張基昌, 1917 『農社に就て』 『朝鮮彙報』 8월호.

29) 동중 - 1876, 1877, 1879, 1883, 1887, 1896년; 상부계 - 1891, 1895, 1896, 1898년.



〈그림 1〉 1879~1909년 모산동 농사 운력전 수입

특히 1886년에 창설된 상부계는 운력전을 징수한 해보다 받지 못한 해가 더 많다. 그리고 동중과 상부계에서 징수한 운력전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데서 그것은 운력군들이 받은 이양과 제초 작업 임금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운력을 해주고 받은 임금 대부분은 운력군들이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 (4) 지대 수취

현존하는 자료에서 洞田<sup>30)</sup>의 존재는 1837년부터 확인된다. 하지만 연하기에는 1862년부터 洞畝 지대수취와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sup>31)</sup> 동답은 1862년 6두락에서 시작하여 1900년대 초반에는 22두락까지 증가한다. 동답의 유래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매매명문을 미루어 보건대, 그 일부는 부세를 갚지 못하는 동민들이 동중에 넘긴 것이다. 鄭邦文은 동중 돈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하자 1837년 자신의 田 4두락을 동중에 넘겼다.<sup>32)</sup> 와환납부를 독촉받던 魏錫會는

30) 『亡結契傳掌記』, “道光十七年 丁酉(1837) 十一月 卅日 洞中僉員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村中債用錢二兩並利三兩 出處無路 故伏在內洞坪曰字田牟利四斗落 價折錢文三兩代 右僉員前 典當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 告官下呈事 牟利主 幼學 鄭邦文(手決) 證 幼學 文碩鎬(手決) 筆 幼學 金尙在(手決)”.

31) 『洞中年下記』 壬戌年(1862) 11月 20日, 禾谷封上記, 浦谷坪資字4斗落2石10斗 加來坪事字2斗落1石8斗.

1882년 답과 灰場 일부를 동중에 매각하였다.<sup>33)</sup> 이때 동중은 그 대금 가운데 와 환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석회에게 주었다.<sup>34)</sup> 적지 않은 농민들이 부세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중뿐만 아니라 동계에서도 동답지대를 1881년부터 수취했다. 1881년 연하기와 『洞契傳掌記』를 살펴보도록 하자.

『洞中年下記』 辛巳(1881) 11월 禾谷 1석15두: 壬午(1882) 2월 일 이상 화곡 1석15두 내, 10두3홉 濟耗租下, 15두 里正 羅家稅下, 在 9두9승7홉 축 9승7홉. 작전 전 2냥7전.

『洞契傳掌記』 辛巳(1881) 11월 20일 (禾谷)1석15두: 壬午(1882) 3월일 이상 화곡 1석15두 내, 10승3홉 濟耗條하, 15두 里正 羅家稅下 在 9두9승7홉, 縮 9승7합, 실 9두가 2냥7전 洞用下.

두 장부 내용이 일치한다. 이 같은 중복기재는 1890년까지 이어진다. 『洞契傳掌記』는 1881년 이후 줄곧 위와 같이 작전한 돈을 동중으로 ‘이전한다[洞用下]’고 기록했는데, 이는 그때부터 동계에서 지대를 수취했음을 의미한다. 화곡과 관련된 기재는 1891년부터 바뀐다. 연하기는 1891년 화곡[조]량을 기재하지 않고 화곡작전액[24냥]만 기재했다. 한편 동계는 1891년 동답지대를 수취하여[87두] 필요한 곳에 조를 지출한 다음 남은 곡물[64두]을 작전하여[24냥] 동중으로 이전하였다.<sup>35)</sup> 정리하면 1880년까지 동중에서 동답을 관리했고, 1881~1890년까지

32) 『亡結契傳掌記』, “道光十七年 丁酉(1837) 十一月 卅日 洞中僉員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村中債用錢二兩並利三兩 出處無路 故伏在內洞坪曰字田牟利四斗落 價折錢文三兩代 右僉員前 典當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 告官下呈事 牟利主 幼學 鄭邦文(手決) 證 幼學 文碩鎬(手決) 筆 幼學 金尙在(手決).”

33) 『亡結契傳掌記』, “光緒八年壬午(1882) 十月十八日 洞中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伏在蒲谷坪資字二斗落 負數 果 由來灰場 伏在蒲谷小咸池上燈谷乙 臥還並利十四兩果 洞錢二兩六錢八分 合十六兩六錢八分代 洞中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 告官下呈事 畚灰場主 幼學 魏錫會(手決) 證 幼學 許齡(手決) 筆 幼學 金瑞英(手決).” 동 매매명문은 에 들어있다.

34) 『洞中年下記』 壬午年(1882) 8월, 2兩6錢8分浦谷坪2斗落資字畚價補下.

35) 『洞中年下記』 壬辰年(1892) 正月 日, 禾谷作錢24兩: 『洞契傳掌記』 辛卯年(1891), 合租4石7斗: 壬辰(1892) 2월 日 以上禾谷4石7斗內 8斗濟耗租下, 3石19斗內 10斗年下食床下, 3

는 동계에서 동답지대를 수취·사용하고 동중에서 그 내용을 체크했고, 1891년부터는 동계에서 동답을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중과 동계는 같으면서도 다른 조직이었음을 의미한다.<sup>36)</sup> 경상도 예천 대저리 사례는 동중[동회]과 동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저리는 1893년 3월 13일 洞楔를 해체하면서 계원 1인당 동답 매각전 20냥을 분배하였다.<sup>37)</sup> 그런데 동회는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열렸다.<sup>38)</sup>

公事員과 관련된 내용 또한 동중과 동계의 관계를 보여준다. 동계 공사원은 『洞契傳掌記』에서 그 이름이 확인되지만 동중 공사원은 연하기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동중은 별도의 공사원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 공사원이 동중 공사원이 처리해야 할 일도 담당했다. 예컨대, 1858년 동계공사원은 金尙益<sup>39)</sup>인데, 그는 1858년 鄭龍欽의 재산을 동중에서 매입할 때 ‘동중공사원’<sup>40)</sup> 자격으로 관여했다. 동계 공사원이 곧 동중 공사원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서 동중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중은 관념적으로 동(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元老 몇 명, 里正, 公事員 등이 모이는 일종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몇 명이 모여 부세납부 재원의 분배나 수합과 같은 일에 대해 결정하면 그것이 곧 洞中公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산 동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洞과 관련된 일을 논의·결정했던 것이 아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石9斗 斗量縮5斗 實3石4斗 7兩5錢例作錢 24兩洞用下.

36) 이용기, 앞의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37) 『예천 맛질 朴氏家日記』 癸巳(1893) 3월 13日, “洞楔至是破碎 各門以水畚打價分□ 每名下二十兩式送劃 無后寡戶則無與焉 餘存者九斗畚.”

38) 『예천 맛질 朴氏家日記』 甲午年(1894), 7월 9日 以防賊之意 洞會立約; 9월 29日 洞會出洞執綱.

39) 『洞契傳掌記』 戊午年(1858) 11월 20日, 公事員金尙益.

40) 『亡結契傳掌記』, “咸豐八年戊午(1858)十二月初二日 洞中公事員 金尙益前明文 右明文事段 叔母主自己買得 累年生居是如可 將營移居 則草尾陳結五負五束年年當納爲難 故伏在毛山村君字垵田七束鹿果 草家三間 價折錢文五兩五錢 買得右陳結五負五束 永永勿徵還意納于洞中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以此文 告官下呈事 家垵主 幼學 鄭龍欽(手決) 證 幼學 魏義祚(手決) 筆 從弟幼學 鄭尙欽(手決).”

건물도 당연히 없었다. 1870년대까지 ‘洞會’, 곧 ‘동중회의’와 관련된 지출이 전혀 없었는데, 1870년대까지 ‘동중’의 실체가 소규모 회의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납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모산동 민심이 조금씩 변해간 듯하다. 즉 1880년부터 간혹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체의 외연이 가끔 확대되기도 했다. 연하기에서 ‘洞會’, 곧 ‘동중회의’와 관련된 지출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80년 7월이다. 더운 여름 나무 그늘 아래 여러 사람이 모여 닭 잡아 놓고 술 한잔 하면서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sup>41)</sup> 1885년부터는 거의 매년 환채분배, 동포분배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평소 회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때 경비를 동중에서 지출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주민들은 동중전답을 동계전답으로 인식했다. 1837년 鄭邦文은 ‘洞中僉員’, 1855년 金允成은 ‘洞中僉員’, 1858년 鄭龍欽은 ‘洞中公事員’, 1882년 魏錫會는 ‘洞中’ 등에 전답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문서를 작성했지만 1904년 尹泰允은 ‘洞契公事員’에게<sup>42)</sup> 답을 매각하는 것으로 명문을 썼다. 전답매입 대금 지출 주체도 바뀌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답매입 때 1882년에는 오직 동중에서 대금을 지출했으나, 1888년 鐵店洞 資字畝 3斗落을 매입할 때 畝價는 동계에서, 興成費는 동중에서 지불했고,<sup>43)</sup> 1903년과 1904년 답을 매입할 때 그 비용을 모두 동계에서 지출했다.<sup>44)</sup> 한편 1910년 동계답 12두락, 1911년 동계답 4두락 방매대금은 모두 동계수입으로 잡혔다.<sup>45)</sup> 이때 매각된 동계답에는

41) 『洞中年下記』 庚辰年(1880) 7月, 3錢洞會時酒價下, 3錢5分洞會酒價下, 9錢 洞會時鷄價下. 이 비용은 조 10두정도 가치에 해당한다.

42) 『洞契傳掌記』1, “大韓光武8년 甲辰(1904) 十一月 廿日 洞契 公事員前 明文, 右明文事 自己買收累年耕食 是如洞契錢所逋夥多 故伏在南下鐵店坪資字4斗落畝 14負數5束庫乙 右錢 29兩4錢代典執爲去乎 日後別有爻象則以此文記告官下正事 畝主 幼學 尹泰允 證人 幼學 邊泰煥 崔台植 筆執 幼學 金漢九.”

43) 『洞契傳掌記』 戊子年(1888) 11月 20日, 43兩5錢 鐵店洞 資字畝 3斗落價下; 『洞中年下記』 戊子年(1888), 1兩 買畝興成下.

44) 『洞契傳掌記』 癸卯年(1903) 11月 20日, 125兩2錢8分 古實坪似字畝3斗落 一夜味負數10負 7束價下; 甲辰年(1904) 11月 20日, 29兩4錢 鐵店坪資字畝4斗落價下.

45) 『洞契傳掌記』 庚戌年(1910), 鐵店坪3斗落 放賣價180兩, 浦谷坪2斗落 放賣價80兩, 月山坪4斗落 放賣價270兩, 古實坪3斗落 放賣價190兩, 辛亥年(1911) 鐵店坪4斗落 放賣價55兩.

1882년 동중에서 매입한 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답에 대한 동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동계와 동중의 차별성 또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중[동회]과 동계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할 때 같고 다른 구체적 양상은 어떤 것일까? 아래 1940년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간현리 사례는 동중[동회]과 동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몇 회의 洞會가 있다. 봄에는 우물을 치기 위하여, 양력 9월에는 교량과 도로 수축을 위하여, 음력 10월에는 성황제를 위하여 정기에 동회가 열렸다. …… 동회 때에 金錢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계에서 부담했다. …… 洞契는 정기적으로 매년 12월에 총회가 열린다. 동계에는 기본재산이 있으므로 해마다 각 戶口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에 1회라든지 또는 부족할 때에 징수한다. 동계 때 동회의 일을 상의하는 경우는 있으나 동회 때 동계의 일을 상의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성황제의 비용을 동계에서 내는 일은 있다. 동회와 동계와 洞祭는 개별의 것이지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다.<sup>46)</sup>

이같이 동계는 동회에 관여하지만 동회[동중]는 동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구성원의 차이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중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아울렀다. 그에 비해 동계는 일부 마을 사람을 포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도 계원으로 받아들였다.

동회 - 동계 관계는 경상도 북부지역의 門中 - 所 관계와 거의 유사하다. 동회 - 동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여 문중 - 소 관계를 간략히 소개한다. 소는 여타 지방의 族契 혹은 門契와 그 성격이 동일하며 景山所, 枝洞所, 申石所 등과 같이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 현재까지도 저명 성씨들은 문중 내에 여러 개의 소를 두는데, 각 소의 인원과 자산규모는 서로 상이하다. 모산동 내에 계가 여러 개 있는 것과 유사하다. 문중원 개개인은 여러 소에 所員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인에게 7대조 관련 所, 13대조 관련 所, 15대조 관련 所가 있으면 그는 아무 조건 없이 3개 소의 소원이 된다. 이는 모산동 동민이 여러 계의 계원이 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후손은 무조건 소원이

46) 鈴木榮太郎, 1944 『朝鮮農村社會踏査記』, 大阪屋號書店.

되지만 계원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에는 문중에 門長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다. 그런데 개별 소에는 예나 지금이나 有司, 辦供 등과 같은 임원[所任]이 있다. 모산동 각종 계에 임원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는 편의상 개별 문중의 派始祖 관련 소를 甲所라 칭하기로 한다. 대체로 문중 내에서 갑소의 권위가 가장 높는데, 그 까닭은 갑소와 문중은 구성원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갑소의 위상과 모산동 여러 계의 중심에 위치한 동계의 지위가 서로 비슷하다. 여타 소의 구성원은 갑소에 비해 적다. 개별 소끼리는 서로 수평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갑소가 여타 소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문중회의인 門會는 모산동 동회처럼 한 해에 여러 차례 열리고, 개별 所會는 모산동 각종 계의 계회[강신]처럼 대체로 연말에 한 차례 개최된다. 문회 때는 문중 제반 일에 대해 논의하며 종가 수리비, 문중명의를 부조금 등과 같은 경비가 필요하면 그것을 개별 소에 분배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회에서는 개별 소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즉 문회[문중]는 개별 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개별 소는 문중 일을 논의할 수 있으나 소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문중 차원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개별 소의 의결 사항이 문회 때 안건으로 상정되어 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문회 이름으로 문중 구성원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한다.

통상 연말 甲會 때 문회도 개최된다. 모산동에서 동계 강신과 동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개별 논의 사항마다 그것이 갑회와 관련된 것인지 문회와 관련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한다. 이같이 문회와 갑회 구성원이 동일하고 한낱한시 같은 장소에서 두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탓에 문중 사람들은 문중[문회]과 갑소[갑회]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sup>47)</sup> 동회와 동계에 대한 간현리 사람들의 생각과 유사하다. 한편 갑소가 없는 문중도 적지 않다. 이는 동계가 폐지된 이후에도 동회가 개최되는 대저리 사례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47) 문중운영 실상은 필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 2) 동외 수입

동외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契錢은 남면에서 운영하는 계에서 분배한 돈이다.<sup>48)</sup> 1893년부터 鄉約契錢 3냥이 동중 수입으로 잡혔다. 동중은 향약계를 淸元[源]契 혹은 面契로 부르기도 했다. 이후 동중은 매년 향약계 본전과 利錢을 향약계에 납부하였다.<sup>49)</sup> 남면(후일 남상면과 남하면으로 분리됨) 청원계는 해이해진 기강과 문란해진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1707년 창설되었는데, 이때 봄 가을 호당 1푼씩 수합하여 기금을 만들었다. 청원계는 그후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여러 차례 重修를 거듭하였다. 현재 다양한 約案과 계원명부가 남아있어 청원계 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sup>50)</sup> 하지만 회계관련 문서가 전하지 않아 재정운영 실상을 알 수 없다.

장흥부 향약계 재정운영의 특성은 古上面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고상면은 이전부터 面契인 淸源契<sup>51)</sup>를 운영해왔는데, 1893년 중수하면서 그것을 향약계로 개명했다. 고상면 향약계는 1893년 장흥부사가 각 면에 기금을 분배함으로써 창설되었다. 1893년은 향약계전이 모산동으로 분배된 해이다. 이는 남하면 향약계도 이때 중수되었음을 의미한다. 1893년 장흥부사가 고상면에 30냥을 분배하면서 면중에서 70냥을 자체 마련하여 연리 40%로 식리하여 賻儀와 春秋講 經費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향약계 기금이 부족하다고 느낀 장흥부사 金宅圭는 1899년 각 면에 계전을 다시 분배하였다. 이때부터 고상면은 150냥을 기금으로 향약계를 운영하였다.<sup>52)</sup>

고상면은 1893년 4월 장흥부에서 배정한 30냥에다 자체 수합한 94.5냥을 더해 각 동에 계전을 분배하였다. 이때 고상면 18개 동에 적게는 2.5냥에서 많게는 14

48) 『洞中年下記』는 향약계를 淸源契, 面契라고도 했다. 장흥부 여타 마을에서도 淸源契, 淸元契, 淸云契 面契 등으로 칭했다. 이용기, 앞의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참조.

49)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50) 이용기, 2009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 『대동문화연구』 67.

51) 『傍村里大同契』 乙丑年(1865), 7兩7錢8分淸源契講信下.

52) 『古上面鄉約契完定節目』 국사편찬위원회/전자자료관/국내사료. 이하 모산동 자료를 제외한 장흥지역 자료는 모두 국편 전자자료관에 소개된 것이다.



냥이 분배되었다. 고상면은 동별로 有司 1인에게 계전을 분배하였는데, 분배금이 모산동중에 들어온 사례로 미루어 보면 18인 개인에게 분배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18개 동중에 할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별 분배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고상면은 1899년 4월 강신 때 계전을 분배하면서 ‘山亭 七兩五錢 又三兩’처럼 동명과 분배금 액수만 기재하고 유사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 후에도 기본적으로 동명만 기재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동명과 유사명을 함께 기록했다. 향약계는 동대표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임을 알 수 있다.

고상면 향약계는 중수 후 1893년과 1895년에는 봄, 가을 강신[총회]을 가졌고 그 나머지 해에는 강신을 1년에 한 번 가졌다. 강신 때 원금과 그것의 20·30·4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합하여 필요한 경비에 쓰고 남은 계전은 다시 유사들에게 분배하였다. 향약계 초기 경비는 주로 강신비, 춘추강학비, 강생명부 작성 비용이었다. 예컨대, 1898년<sup>53)</sup> 4월 강신 때 지출 내용을 보면 그해 9월 강회비 7.2냥, 춘강비 25.27냥, 講生單子條 3냥, 기타 비용 2.84냥을 지출하고, 남은 돈 137.37냥을 각 동 유사에게 분배하였다. 초기 계전운영은 장흥부의 창계 취지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상면 향약계는 1901년 4월 강회[강신] 때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이듬해부터 각 동이 돌아가면서 강회를 주관하고, 향약계는 그 비용으로 30냥을 지출하기로 했다.<sup>54)</sup> 그 이전에도 개별 마을이 강신을 주관하였지만<sup>55)</sup> 그에 관한 규칙도 없었고 강신비용도 해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향약계는 1902년~1906년까지 2~4개 동이 강회를 주관하며 운영되었다.<sup>56)</sup> 강신비가 향약계에서 지원하는 30냥을 초과할 때는 강신을 주관하는 동에서 부담하였다. 이렇게 한 까닭은 향약계에서 지출하는 강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향약계는 1901년만 하더라도 강회 비용으로 61.72냥을 지출했으나 1901년부터는 30냥만 지출했다. 이렇게 강회 비용을 절약한 향약계는 1906년 호당 4전씩 189호에 모두 75.6냥을 환급했는데,

53) 1896년까지 강신 당일 지출을 모두 ‘講下’ 혹은 ‘講信下’로 일괄 처리했다.

54) 『鄉約契錢分給殖利冊』 辛丑年(1901) 4月, “辛丑四月初五日爲完約事 每年講會分里輪定而青日下記 以三十兩爲定事.”

55) 『傍村里大同契』 乙丑年(1865) 7兩7錢8分清源契講信下.

56) 1902년 山西, 山東, 牛山, 1903년 壽洞, 漁隱, 外略, 1904년 東頭, 新塘, 山亭, 1905년 枝北, 松峴, 楮谷, 大坪, 1906년 傍村, 平村.

애초에는 호당 5전씩 환급할 예정이었다.<sup>57)</sup> 호당 5전을 환급하려고 한 이유는 바로 1893년 고상면 향약계를 창설할 때 각 동에서 수합한 94.5냥을 돌려주려는 취지였다. 한편 1차 輪里講信이 1906년 끝남에 따라 約中은 1907년부터는 더 이상 윤리강신을 하지 않고 계전에서 강신비용을 지출하되, 매년 30냥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完議를 작성했으나<sup>58)</sup> 잘 지켜지지 않았다.<sup>59)</sup>

전반적으로 고상면 향약계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봄, 가을 강회를 통해 향약이 실생활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三綱錄 보급에도 힘썼다. 그리고 1909년 3월 17일 96.7냥을 학교 매입비로 출연하고, 95냥을 각 동에 환급함으로써 그 생을 마쳤다.<sup>60)</sup> 1909년 2월 22일에 전통 강회가 신식 학교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향약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장흥부사의 지원이 있었다. 장흥부사는 두 차례 계전을 분급했을 뿐만 아니라 1893년 4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고 約例를 부기한 문서를 각 동에 분배하였다.<sup>61)</sup>

### 3. 부세 상납

#### 1) 공동납 주체 변화

동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동계에서 모산동과 관련된 지출을 맡았다. 예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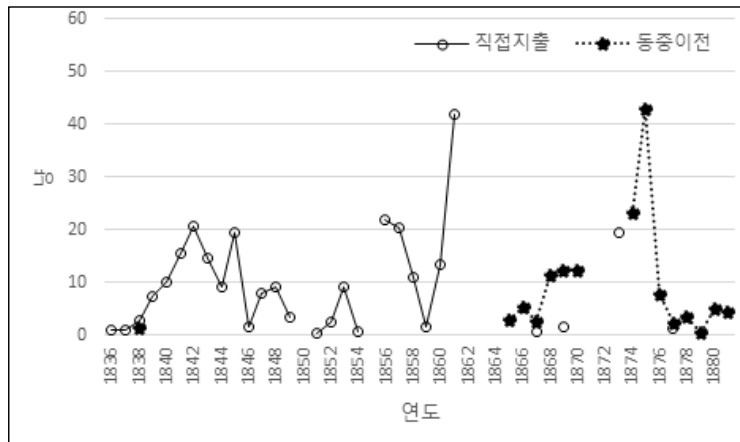
57) 『鄉約契錢分給殖利冊』 丙午年(1906) 4月, “錢九十四兩五錢 每戶五錢式收斂矣 至今丙午 約會僉議齊發 每戶五錢式還爲出給是遺 一錢式補契中 減七十五兩六錢.”

58) 『鄉約契錢分給殖利冊』 丙午年(1906) 4月, “完約 右完約事 本面約契殖利錢 而不贍之致 年年輪里講信矣 今也則輪既畢矣 自所會僉議齊發 定判有司出約會錢 每年修契 而當日下記 以三十兩爲定事 丙午 四月四日 約中.”

59) 『鄉約契錢分給殖利冊』 丁未年(1907) 4月 4日, 講信 37兩9錢講下.

60) 『鄉約契錢分給殖利冊』 己酉年(1909) 2月 22日, 96兩7錢學校賣下 …… 30兩各里添補錢還給下 …… 在錢3兩9錢1分; 3月 17日, 96兩7錢學校錢下 …… 各里分給條95兩下 舊戶壹百九十戶 每戶五錢式 …… 餘在錢4兩8錢7分. 1909년 강신은 2월 22일과 3월 17일 두 번 개최되었다. 『鄉約契錢分給殖利冊』은 1909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61) 장흥부사가 내려준 『鄉約 古上玉洞』이 그러한 사실을 전한다.



〈그림 2〉 동계전의 직접지출과 동중 이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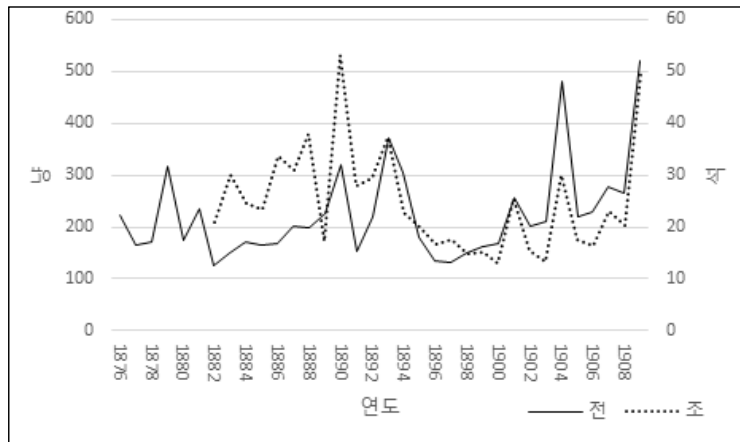
대, 1836년 “1兩4錢9分 書員役只下”와 같은 형식이다. 1861년까지 동계는 대체로 필요한 곳에 직접 지출했다. 그리고 동계는 식리활동으로 증식한 돈으로 지출을 감당했다. 1861년까지 동계수입에서 이자수입이 90.5%를 차지했다.<sup>62)</sup> 그런데 1865년부터 지출형식이 바뀐다(〈그림 2〉 참조).<sup>63)</sup> 1865년부터 동계는 직접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계전을 동중으로 이전했다. 예컨대, 1877년 “2兩3錢2分 年用下”와 같은 형식이다. 같은 해 연하기 수입조를 보면 “동계전 2兩3錢2分”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같이 1865년부터는 동계전을 동중으로 이전하면 동중에서 그것과 여타 수입을 섞어 각종 지출에 사용했다. 모산동에서 동계를 창설한 주요 목적이 응세였지만<sup>64)</sup> 계전 이자로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응세와 관련된 일을 동중으로 이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연하기가 온전히 남아있는 1876~1909년까지의 동중지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연하기 지출은 전, 조, 미로 구분되는데, 연도에 따른 변화상을 살펴볼 때 명목가치[전]보다 실질가치[조]가 더 유용할 수도 있

62) 1861년까지 동계수입 250.31兩의 구성을 보면 이자 226.53兩(90.5%), 추입전 12.2兩(4.9%), 기타 4.79兩(1.9%), 촌중수합전 6.79兩(2.7%)이다.

63) 이 기간 동안 동계는 410.25兩을 지출했는데, 그 가운데 직접지출이 266.53兩(65.0%), 동중이전이 138.14兩(33.7%), 용도불명이 5.58兩(1.4%)이다.

64)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그림 3〉 동외 지출액 추이

기 때문에 전과 그것을 조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살펴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전을 조로 환산할 때 『洞契傳掌記』 해당 연도 作錢例를 적용했다. 동중지출을 동외지출과 동내지출로 구분했을 때 동외지출이 전체의 85.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sup>65)</sup> 동외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항목은 군포, 환곡 등과 같은 정규세로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관이나 면에서 주도하는 각종 계전[契의 本利錢] 등과 같은 잡세와 부세납부 비용이다. 세 번째는 作廳과 같은 기관, 읍주인(사령)을 비롯한 관속, 先達과 같은 유력자 등의 요구에 응한 求請이다. 네 번째는 향리를 비롯한 관속 접대비의 일종인 役只다. 동외지출은 부세 혹은 그와 관련된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전을 기준으로 본 동외지출액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200냥 전후를 오르내리던 동외지출액은 1902년 이후에는 200냥 이상으로 증가한다. 연평균은 225.03냥이다. 한편 동외지출액의 실질가치, 즉 작전례를 적용하여 조로 환산하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1892년까지는 30석을 오르내리다가 1893년 이후에는 20석을 넘나든다. 1882~1909년까지 연평균은 24.9석

65) 동중의 지출은 총 8923.86兩인데, 그중 동외지출 분이 7653.34兩(85.8%), 동내지출 분이 1149.11兩(12.9%), 불명이 121.41兩(1.4%)이다.

이다. 이는 모산동 주민들이 납부하던 전결세의 약 50% 수준이다. 이 시기 모산동 주민이 경작하던 전답의 전결세는 대략 50석 정도였다.<sup>66)</sup> 모산동 주민들은 1년에 부세로 75석 정도를 납부한 셈이다. 19세기 중엽 모산동 家戶가 대략 40여 호<sup>67)</sup> 내외였으므로 개별 호가 1년에 부담한 부세는 평균 2석(40두)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가호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받은 부세 압박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1858·1869년 모산동 호당 평균 경작지가 7.6두락이고,<sup>68)</sup> 여타 경상도 지역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모산당 답 1두락의 생산량은 대략 조 30두 전후였을 것으로 보인다.<sup>69)</sup>

## 2) 군포 상납

동외지출을 정규세와 그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전체의 56.6%를 차지한다. 정규세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군포다(〈그림 4〉). 19세기 중엽 장흥부는 군역자를 生丁과 亡丁으로 나누었다.<sup>70)</sup> 연하기의 군포 관련 기록을 보면 道先처럼 실명을 쓴 유형[生丁]과 이름 없이 단지 ‘亡丁’이라고 기재한 경우로 구분된다.<sup>71)</sup> 생정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망정은 실존하지 않은 군역자임을 알 수 있다. 생정은 호적 본문에 기재된 군역자이고 망정은 도이상조[합계란]와 관련된 군역자라고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호적 본문과 도이상

66) 『全羅南道長興郡所在庄土龍洞宮所管圖書文績類』(奎 19301)에 1797~1798년에 작성된 장흥지역 토지매매명문 206장이 실려있는데, 거기에서 확인되는 답 1두락은 평균 3부6속이다. 그리고 1869년에 작성한 『別備米分排記』에 실린 모산동 주민의 경작지는 292.7두락이다. 이 자료를 종합하면 1869년 경작지는 10결 53부 7속이 된다. 당시 1결의 전결세는 조 100두였으므로 모산동 주민이 부담한 전결세는 52석을 조금 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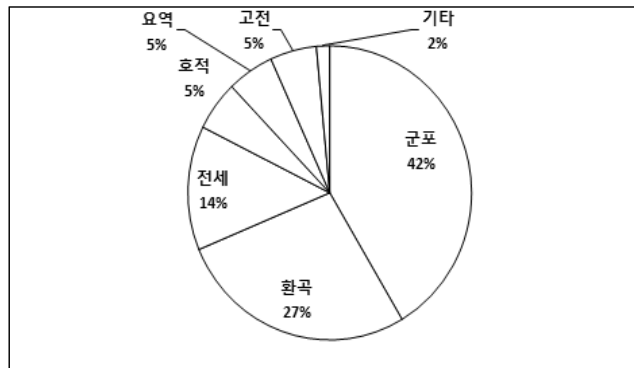
67) 김건태, 2020 『조선후기 호적대장 호구차정 원리』 『대동문화연구』 110.

68) 1858년 『還財分排記』; 1869년 『別備米分排記』.

69) 정진영, 2005 『19~20세기전반 한 ‘몰락양반’가의 중소지주로의 성장과정』 『大東文化研究』 52; 김건태, 2011 『19세기 어느 성리학자의 家作과 그 지향』 『한국문화』 55; 김건태, 2018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70) 『洞中年下記』 乙卯年(1855) 11月 20日, 生丁名下加收錢1兩8分 …… 生丁名下加收錢1兩2錢; 戊午年(1858) 正月 晦日, 3兩亡丁尊位給.

71) 『洞中年下記』 己未年(1859) 7月 15日 道先軍丁2兩, 小者1兩, 允先1兩, 亡丁1兩 合 5兩 順金持去. 道先, 小者, 允先(成) 등은 1858년 還財分排記, 1858년 運力未到記 등에서 확인된다.



〈그림 4〉 동중의 정규세 상납 내역(단위: 냥)

조의 군역자 기록양상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다. 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호적 본문과 도이상조에 실린 군역자수가 거의 일치했다. 그런데 19세기 호적 본문에 기재된 군역자수는 중앙정부에서 할당한 도이상조의 액수보다 훨씬 적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도이상조의 군역자수를 근거로 군포를 징수했다.<sup>72)</sup> 생정과 망정을 합하면 도이상조의 군역자 액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산동 사례를 통해 19세기 軍政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자(〈표 2〉 참조). 1858년 동중은 연하기에 군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남기고 있는데, [公錢典授記 - 이하 자료a로 칭함], [戊午年公錢收給記 - 이하 자료b로 칭함], [村中亡丁錢 - 이하 자료c로 칭함] 등이 그것이다. 한편 1858년 연하기 '本文'에도 위의 내용 일부가 산발적으로 나온다. 1859년에는 [生丁捧上記 - 이하 자료d로 칭함]에 군포상납과 관련된 지출을 정리해 두었다. 자료a에는 군포와 관련된 1년치 지출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타 자료와 비교해보면 하반기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자료c와 대조해보면 전반기 액수[소계1]는 거의 유사하지만 하반기 내용은 차이가 크다. 한편 자료b는 하반기 지출만 정리한 것이고, 자료c는 1년 치 내용을 모두 기록한 자료다.

72) 단성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호적대장연구』, 대동문화연구원.

〈표 2〉 1858 · 1859년 『洞中年下記』 군포관련 기록

(단위: 냥)

월/일	1858년 公錢典授記[자료a]			1858년 公錢收給記[자료b]			1858년 村中亡丁錢[자료c]			1859년 生丁捧上記[자료d]		
	액수	출처 혹은 명목	납부처	액수	출처	납부처	액수	출처	납부처	액수	출처	납부처
1/12	1	道先	勸農									
1/25	3	道先, 小者, 獨談										
1/26										3.6	獨談, 允成, 小者	勸農
1/29	3	肅查錢	尊位									
1/30										2.5	亡丁	尊位
2/1							1		梁哥			
2/4										2		勸農
2/5	1	洞錢	尊位									
2/8							2.5		梁哥			
2/9	1	允成	尊位							2		勸農
2/11							4		梁哥			
2/14	2	洞錢	尊位									
2/15										2		尊位
2/19										2		梁順金
2/25										2.76		勸農
2/25										2	拔錢, 救弊錢	
2/26							3		梁哥			
3/7										1	拔錢	尊位
3/9							2		尊位			
3/14	2	道玉, 萬太	尊位									
3/20							2.08		梁哥			
3/29	2	道玉, 道先	海倉				2	公錢	梁哥			
4/12	2	亡丁										
4/12												
4/12	1	救弊										
5/9							1.4		尊位			
5/16							0.5		梁哥			
소계	18						18.48			19.86		
7/11	3	道先, 萬宗, 小者	尊位									
7/11	7.7	亡丁										
7/14				2		梁哥	2		梁哥			
7/15										5	道先, 小者, 允先, 亡丁	順金
7/20				4		梁哥	4		梁哥			

7/20			4		尊位	6	軍錢	尊位			
7/20			2	道先	尊位						
7/20			1	獨談	尊位	1		尊位			
7/20			2		尊位	2		尊位			
7/21									4	亡丁	
7/27									1	道玉	順金
7/29									2.6	肅查利錢, 洞錢	尊位
8/6									3	道玉, 道仙, 獨談	順金
8/25									3.1	生丁, 洞錢, 萬太	順金
9/15			1		允玉	1		允玉			
9/15			0.35	牟還錢	尊位	0.35	牟錢還	尊位			
9/25			1.25		允玉	1.25		允玉			
10/7									3	後木錢	順金
10/16			1		允玉	1		允玉	2	後木錢	順金
10/21			1.8		梁哥	1.8		梁哥			
10/26									1.24	後木錢	順金
11/1			1		允玉	1		允玉			
11/2	3.4	後木錢	尊位父								
11/6	3.32	後木錢	海倉								
11/6	1	拔錢	海倉								
11/6	1	救弊	尊位								
11/9			1		梁哥	1		梁哥			
11/20			1		梁哥	1		梁哥			
11/26									1	救弊錢	順金
12/15			1		梁哥	1		梁哥			
12/21			1.3		梁哥	1		梁			
소계	19.4		25.7			25.4			25.84		

\* 비고: 자료d의 전반기는 [生丁捧上記], 후반기는 『洞中年下記』 ‘본문’ 내용임.

군포가를 한꺼번에 일괄 납부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자료a는 4월 12일까지 상납한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모두 상납하였음 확인함[畢納 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동중 공전을 모두 상납하였음 확인함 [洞中公錢 畢納 印]’이라고 적어두었다. 1년 치 군포를 두 차례, 전반기[春等]와 후반기[秋等]로 나누어 상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포납부 관행이 자료a에는 춘등분을 자세히 정리하고, 자료b에는 추등분만을 적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반기와 후반기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주된 원인은 공인된 수수료



라 할 수 있는 後木錢이 후반기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상납액에서 후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8년 18.0%[자료a], 1859년 13.7%[자료d]였다. 그런데 후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예컨대, 1871년, 1872년, 1873년 군포 상납액은 앞 두 해와 비슷한데, 후목전의 비중은 각각 59.4%, 86.4%, 81.3%였다.<sup>73)</sup> 1870년대 장흥부는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게 되자 군포납부 수수료를 크게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a는 1858년 전반기에 16명(생정 9명, 망정 7명)분의 軍布價 17냥과 尊位에게 준 救弊(人情에 해당 - 추후 자세히 설명함)錢 1냥을 합해 18냥을 상납했음을 밝히고 있다.<sup>74)</sup> 군포가는 1명당 1냥, 즉 1년에 2냥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道先, 道玉, 小者, 獨談, 允成, 萬太 등 납부자의 실명이 확인될 때의 납부액을 보면 1인당 1냥이 기본이다. 그리고 망정도 1인당 1냥을 기본으로 했다.<sup>75)</sup> 생정 망정 불문하고 군포는 1인당 1년에 2냥인 셈이다. 균역법 제정 때 정해진 군포가가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포는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동중은 생정이 빈한하여 스스로 군포를 부담하지 못하면 채부형식을 빌려 대신 납부하기도 했는데, 생정이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의 재산을 동중소유로 만들기도 했다.<sup>76)</sup> 한편 동중은 16인의 군포가로 17냥을 상납했는데, 거기에는 존위에게 준 求請[인정] 1냥이 포함되어 있다.<sup>77)</sup> 이같이 동중은 존위에게 준 求請 1냥을 군포의 일부, 즉 부세로

73) 『洞中年下記』 辛未年(1871), 19兩3錢2分 洞布錢下, 19兩4錢 洞布下, 10兩6錢 後木錢下, 12兩4錢 後木布價下; 壬申年(1872), 17兩2錢 洞布錢下, 1兩 加出下, 秋等 18兩4錢 洞布錢下, 31兩6錢4分 後木布價下; 癸酉年(1873): 17兩5錢 春等洞布下, 18兩4錢 戶布錢下, 13兩6錢 後木條, 15兩6錢 後木布價下, 1871년 원목 38.72兩, 後木 23兩(원목 대비 59.4%), 1872년 원목 36.6兩, 後木 31.64兩(86.4%), 1873년 원목 35.9兩, 後木 29.2兩(81.3%).

74)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公錢典授記], 以上生亡丁合16名 錢16兩9錢6分 加4分 抹弊錢1兩 合18兩 畢納印.

75) 『洞中年下記』 己未年(1859) 7月 15日, 道先軍丁2兩, 小者1兩, 允先1兩, 亡丁1兩 合5兩 順金持去.

76) 『洞中年下記』, “咸豐五(1855)年 乙卯 十二月 初三日 洞中僉員主前明文 右明文事 矣妻男 吳小者 不幸身死 軍丁擔責無路故 渠矣由來禳奮 伏在加來坪事字二斗落 八負八東庫乙 右軍役擔當之意 本文記并以 納上于僉員主前爲遣 日後族戚中 如有爻象 則以此文 告官下呈事 明文主 妹夫 金允成(手決) 證洞中公司員幼學 金尙璘(手決) 保 幼學魏鏞祚(手決) 幼學金尙觀(手決) 良人徐國萬(手決) 金道先(手決) 筆 幼學許齡(手決).”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1858년 봄 존위에게 준 또 다른 구폐 1냥도 부세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인정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동중은 人情錢을 마련하기 위해 생정 1인당 2푼을 더 걸기도 했다.<sup>78)</sup>

이같이 군포전을 마련할 때 군역자가 생정전, 동중이 망정전을 마련했다. 그런데 1858년 상반기에 道先(3냥), 道玉(2냥), 獨談(1냥), 萬太(1), 小者(1냥), 允成(1냥) 등 6명이 생정포가 9명분을 상납했고, 1858년 하반기에도 이들 6명이 거의 비슷한 액수를 부담했다.<sup>79)</sup> 왜 6명의 부담액이 다를까? 경제력 차이가 부담액을 달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1858년 경작면적은 道先 19.5두락, 道玉 4두락, 獨談 4두락, 萬太 8두락, 小者 5두락, 允成 4.5두락이다. 도선의 살림살이가 넉넉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옥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가진 만태나 윤성보다 더 많은 양을 부담했을까? 환재부담과 관계가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1858년 동중은 도옥의 환재를 면제시켜주었다. 그가 부담해야 할 환재는 경작지 면적을 볼 때 대략 1냥 정도였다.<sup>80)</sup> 이같이 동중은 동민들에게 환곡, 군포 등 개별 부세를 배분할 때 대상자의 경제력과 그들이 부담하는 부세총량을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호적에 군역자로 등재되었는데도 군포[생정전]를 내지 않은 3명이 누구였을지 추정해 보자. 다시 말해 도선과 도옥이 부담했던 3인분은 원래 누구의 몫이었을까? 앞에서 살펴본 運力軍, 즉 1858년 ‘자발적 운력’을 주도한 聖章, 文賢, 希文, 允賢, 贊瑞 가운데 3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77)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正月 晦日, 3兩亡丁尊位給; 2月 初5日, 亡丁錢1兩尊位; 2月 14日, 夜 亡丁錢2兩尊位給; 2月 27日, 市 1兩蔡尊位求請下; 4月 12日, 1兩4錢2分亡丁尊位 掄弊錢1兩尊位給 4分尊位處加下. 자료a에는 2월 27일 지출이 보이지 않고, 4월 12일 3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2월 27일 지출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회계처리 했음을 알 수 있다.

78) 『洞中年下記』 己未年(1859) 『生丁捧上記』, 獨談1兩2分 允成1兩2分 小者1兩2分 正月 26日 勸農給.

79) 『洞中年下記』 己未年(1859), 道先(3兩), 道玉(2兩), 獨談(1兩), 萬太(1.1兩), 小者(1兩), 允先(成, 1兩)

80)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還財分排記』, 康津宅4斗落米1斗8升錢1兩納在2分租4升太1升; 新村宅2斗落米9升錢4錢5分租2升太1升; 牛目宅1斗落米4升5合錢2錢6分內9分納在1錢6分 租1升太1升; 陽沙宅1斗落米4升5合錢2錢5分租1 太1升. 米 작전가가 조금씩 다르지만 4두락 경작자의 부담은 대략 1兩 정도다.

들은 하나같이 1858년 환재분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거액의 운력전을 동중에 내놓음으로써 환곡과 군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공동납을 논할 때 동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컸다. 면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 호적이 면 단위로 작성된 사실을 감안하면 면이 군포 할당과 징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 도이상조 군액, 즉 망정을 동별로 할당하는 일을 군현[장흥부]이 주관하는 것보다 면[남면]이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연하기에서 군포 할당과 관련된 면의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징수와 관련된 면의 역할을 보건대, 할당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면은 산하 각 동의 군포를 수합하여 장흥부에 상납하였다. 그런데 1858년 봄 군포 납부 일자와 납부처가 상이하다. 부연 설명하면 1858년 군포 관련 내용은 자료a와 연하기 ‘본문’<sup>81)</sup> 두 곳에 정리되어 있는데, 두 내용은 일치한다. 따라서 동중이 면[준위, 권농]에 군포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료c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중은 자료a에 기록된 날짜에 군포가를 면에 납부했고 면은 산하 각 마을의 군포를 수합하여 자료c에 나오는 날짜에 장흥부[梁哥]에 상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포상납과 관련된 장흥부의 양가는 <표 2>에 나오는 梁順金이며, 그는 장흥부의 군포색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추정은 1859년 군포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1859년 군포 관련 기록 또한 연하기 몇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해 10월 7·16·26일 기록은 두 곳에서 확인된다. 하나는 後木錢을 順金에게 낸 기록(<표 2>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軍錢[元木]을 權農에게 준 기록이다.<sup>82)</sup> 날짜별 액수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軍錢이 곧 후목전이고 순금은 양가, 곧 양순금이다. 그런데 면임인 權農을 지칭하여 ‘梁哥’라 할 수는 없다. 즉 동중에서 색리를 지칭할 때 그를 낮추어 ‘哥’라 할 수는 있어도, 勸農을 卑稱할 수는 없다.

81)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正月 晦日, 繡查錢5兩5錢內 3兩亡丁尊位給; 2月 初5日, 亡丁錢1兩尊位給; 2月 14日, 夜亡丁錢2兩尊位給; 2月 27日, 市 1兩蔡尊位求請下; 4月 12日, 1兩4錢2分亡丁 尊位 攄弊錢1兩尊位給 4分尊位處加下.

82) 『洞中年下記』 己未年(1859) 10月 初7日, 后木錢3兩順金給; 10月 16日, 后木錢2兩順金給; 10月 26日, 后木錢1兩2錢4分順金給; 10月 初7日, 軍錢3勸農給; 同月 16日, 軍錢2兩勸農給; 同月 26日, 軍錢1兩2錢4分勸農給.

이 시기 군포가 생정포와 망정포로 구성되고, 군역자가 전자를, 동중이 후자를 납부하던 모습은 장흥부 고상면 傍村里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1863년 傍村里 大同禋 전장기를 보도록 하자.

洞亡丁 16명 건은 내년부터 下廳에서 담당하고, 冬栢에 있는 旣字 3斗落畝 帳字 4斗落畝 對字 4斗落畝 (지대)로 亡丁을 감당함. 仲日 軍錢 4냥 내에 2냥은 如昇(이 부담하고) 2냥은 國珍(이 부담하고) 達宗 軍錢 7냥2전3푼 내에 3냥7전5푼은 國珍(이 부담하고) 3냥4전8푼은 乃三(이 부담하고) 孟春 軍錢 7냥 내에 4냥은 允敬(이 부담하고) 3냥은 元淡(이 부담한다).<sup>83)</sup>

傍村里에 할당된 망정 16명 포가는 동답 11두락 지대로 납부하고 仲日, 達宗, 孟春 등의 이름으로 고지된 생정 포가 18.23냥은 如昇, 國珍, 乃三, 允敬, 元淡 등이 부담했다. 傍村里 동중이 부담했던 망정 포가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66년 동답 9두락 지대가 5석<sup>84)</sup>이었던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액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생정포가는 전반기 분이다. 傍村里 생정포가 또한 모산동처럼 전후반기 액수가 다르고, 부담자도 해마다 약간씩 변했다.<sup>85)</sup>

한편 연하기 군포 관련 용어가 1870년대 들어 바뀐다. 生丁軍錢과 亡丁軍錢이 사라지고 洞(戶)布錢<sup>86)</sup>, 陞戶(伍)錢, 別砲錢, 火炮錢 등이 등장한다. 동포전은 이전의 망정군전과 계통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승호군은 상경입번하는 훈련도감 소속 상비군이다.<sup>87)</sup> 별포군과 화포군은 병인양요 이후 설치되기 시작한

83) 『傍村里大同禋』 辛亥年(1863), “洞亡丁十六名段 自明年爲始下廳擔當是遣 冬栢在旣字三斗落畝 帳字四斗落畝 對字四斗落畝 以次救弊於亡丁是齊 仲日軍錢四兩內 二兩如昇 二兩國珍 達宗軍錢七兩二錢三分內 三兩七錢五分國珍 三兩四錢八分乃三 孟春軍錢七兩內 四兩允敬 三兩元淡.”

84) 『傍村里大同禋』 丙寅年(1866) 12月 15日, “禾谷記 蛇坪畝四斗落只三石縮一斗 五斗落只正二石荒一石.”

85) 『傍村里大同禋』 癸亥年(1863) 12月 15日, “中金軍錢四兩國辰 達宗軍錢九兩七錢四分國辰 孟春軍錢九兩八錢元淡 …… 仲日軍丁錢四兩 達宗軍丁錢八兩六錢四分國辰 孟春丁軍錢八兩七錢內 六兩元淡 二兩七錢長祚.” 癸亥年 기록은 몇 군데 나뉘어있는데, 액수로 보았을 때 앞부분은 후반기, 뒷부분은 하반기 생정포가인 것으로 보인다.

86) ‘호포’는 1895년 처음 등장하며, 그 이후 특정 연도에는 ‘호포’와 ‘동포’ 가운데 한 가지만 등장한다.

포군이다. 포군은 지역에 따라 砲手, 別破陣, 別砲軍, 火砲軍 등으로 불렸는데,<sup>88)</sup> 연하기에 등장하는 별포군은 강진병영 소속의 포군이고, 화포군은 상경입번하는 군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에서도 화포군이 상경입번했는데, 동중은 1876년 상경하는 화포군 노잣돈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다.<sup>89)</sup>

1870년 무렵 생정-망정 구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군포 마련 체제 또한 동단일에서 면-동의 이중구조로 바뀐다. 1870년대 들어 면이 군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아래에 소개된 1879년 연하기를 보도록 하자.

己卯年(1879) 8월 일, 4兩2錢 郁鉉 火砲襖錢 無利條下, 2兩5錢3分 火砲錢下.

위에서 보듯이 화포전을 두 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하나는 옥현이 가입되어 있던 화포계[4냥2전]이고, 다른 하나는 동중[2냥5전3분]이다. 옥현은 꽤 가난했던 모양이다. 1878년에도 동중이 그가 납부해야 할 계전의 이자를 대납하기도 했다.<sup>90)</sup>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포계전을 동중에서 대납해준 것은 이 두 사례가 유일하다. 그에 비해 동중은 거의 매년 화포전을 납부했다.

옥현이 가입되어 있던 화포계는 남면이 주관했다. 화포계의 창설 연도는 정확하지 않는데, 대원군이 상경입번하는 화포군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18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상경입번하는 화포군이 창설됨으로써 이전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자 장흥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비용을 마련했다. 일부는 동으로부터 거두고, 일부는 면별로 돈을 분배하여 그 돈을 계전으로 삼아 식리하여 상납하도록 했다. 남면의 화포계 운영실상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장흥부 고상면 사례를 통해 그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고상면 화포계는 정부가 화포군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1870년 전후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sup>91)</sup> 고상면 화포계는 1880년대 후반 들어 위기를 맞았다. 1886년 1월 19개 동 22명에게 119.2

87) 김종수, 2003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해안.

88) 배향섭, 2002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89) 『洞中年下記』 丙子年(1876) 1月, 3兩8錢火砲軍上京 路資下.

90) 『洞中年下記』 戊寅年(1878) 6月 日, 1兩3錢6分旭賢火砲錢利條下.

91) 1871년에 작성된 고상면 『火砲契錢成冊』이 전한다.

냥을 분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의 20%를 이자로 징수할 예정이었다.<sup>92)</sup> 그런데 그해 7월 6명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명은 일부만 납부했다.<sup>93)</sup> 그래서 면증은 하는 수 없이 원금에 이자를 얹어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분배금은 121.1냥으로 전보다 조금 늘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방식은 장흥부 각종 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대부분을 탕감 처리한다.<sup>94)</sup>

화포전을 비롯하여 모산동에 할당된 각종 군포는 호적에 등재된 戶數와 관련이 있다. 아래 소개된 1879년 연하기 내용을 보도록 하자.

秋等 每戶 洞布錢 1냥2전2푼, 雇馬錢 4전, 別砲錢 2전3푼, 勝伍錢 1전3푼.

1850년대에는 수취 단위가 人[名]이었으나 이때는 戶로 바뀌었다. 1879년 가을 동중은 동포 10호, 고마·화포(별포)·승오전 각 11호가 부담해야 할 군포를 상납했다.<sup>95)</sup> 왜 동포만 10호인지 알 수 없다. 가을에는 동포 元錢에 더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後木과 後錢이 추가되기<sup>96)</sup> 때문에 동포 1호를 감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秋等’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장흥부는 이전처럼 군포전을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수취했다.

그런데 봄에 할당된 군포는 가을과 비교했을 때 호수도 다르고 각 군종별 부담액도 다르다. 1879년 봄에 동중은 13호의 동포, 고마전, 별포전을 상납했는데, 1호당 布價는 각각 1냥1전4푼, 4전, 2전7푼이다.<sup>97)</sup> 한편 동포와 고마전은 1년 치를 두 번(봄, 가을)에 나누어 상납했으나 별포전과 화포전은 1년 치 군포를 봄 또는 가을에 몰아서 한꺼번에 상납했다. 승오전은 봄에 납부한 것으로 마감하려

92) 『火砲契錢成冊』 丙戌年(1886) 正月 日.

93) 『火砲錢捧上冊』 丙戌年(1886) 七月 日.

94)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95)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년 8月, 12兩2錢洞布元錢下 4兩4錢雇馬錢下 2兩5錢3分火砲錢下 1兩4錢3分陞戶錢下.

96)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년 8月, 8兩5錢後木錢下 6兩2錢(後木)布價下.

97)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년 3月 21日, 14兩8錢2分洞布下 5兩2錢雇馬錢下 3兩5錢1分別砲饒錢下.



〈그림 5〉 동중의 군포 상납 현황

고 했는데, 장흥부[남면]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다. 즉 가을에 승오전 부족분을 일부 상납했다.<sup>98)</sup> 액수가 큰 동포는 두 차례 나누어 내고, 액수가 적은 고마전, 별포전, 화포전 등은 1년에 한 번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다. 1879년과 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병종별로 호수가 다르고, 동일 병종의 봄과 가을 호수가 상이하고, 병종별로 부담액이 다르고, 동일 병종의 봄과 가을 군포가가 차이 나고, 병종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혹은 2번 상납했다.<sup>99)</sup> 그리고 가을에는 後木과 後錢을 부담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중이 부담한 군포전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5〉 참조). 전으로 상납한 군포가는 단기적으로는 증가와 반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50~60냥 사이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로 환산한 군포상납액은 1891년까지는 10석 아래위를 오가다가 1892년부터 뚝 떨어져 그 이후에는 대략 5석 정도를 유지한다.

98)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년 8월, 1錢1分陞伍不足錢下.

99) 『洞中年下記』 庚辰年(1880) 1월, 11兩4錢洞布下(10호, 호당 1兩1錢4分) 4兩4錢雇錢下(10호, 호당 4錢4分) 2兩5錢3分火砲饒錢下(11호, 호당 2錢3分); 7월, 3兩1錢5分秋等火砲饒錢下(9호, 호당 2錢3分) 12兩9錢8分 秋等洞布下(11호, 호당 1兩1錢8分) 5兩5錢5分雇錢下 3兩1錢5分別砲饒錢下(9호, 호당 2錢3分). 7월에 고마전을 상납한 호수 및 호당 부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 3) 환곡 상납

19세기 후반 환곡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했다. 租, 米, 牟, 太 등의 현물을 나누어준 다음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수취하기도 하고, 현물분급 없이 전, 조, 미, 모, 태 등을 수취하기도 했다. 현물분급 없이 수취만 하는 臥還이 1854년 이후 매년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19세기 전반에 이미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sup>100)</sup> 모산동이 분배받은 환곡량은 호적에 근거해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장흥부는 먼저 호당 환곡량을 정하고, 다음으로 호적에 등재된 호수를 헤아려 개별 마을의 환곡량을 책정했던 것 같다. 그래서 모산동은 '還戶'수를 줄이려고 백방으로 애썼다.<sup>101)</sup> 장흥에서는 환곡을 統拔錢이라 칭하기도 했는데,<sup>102)</sup> 환곡이 호적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모산동은 환곡량을 통보받으면 邑倉 또는 南倉으로 사람을 보내 받아왔다. 1858년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자. 1858년 연하기에서 租還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3월 초3일, 初等 租還을 邑倉에 가서 받아들 때 2錢7分 지급함.<sup>103)</sup>

② 3월 초3일, 初等 租還 3석 12두 2승 가운데 孫寬默에게 2石을 주고, 景甫에게 1石을 주고, 12두 2승은 (쌀) 5두 8승으로 대신했는데, 그 값을 8전으로 쳐서 汝化가 가지고 갔음.<sup>104)</sup>

100) 『洞中年下記』 甲寅年(1854) 11月 20日, 租還作錢1兩7錢 還餘米6斗作錢1兩5錢 …… 還餘米18斗6升8合 價4兩6錢7分 …… 邑倉租還20斗價1兩6錢 …… 邑倉租還17斗3升價1兩3錢8分 …… 邑倉牟還錢3錢5分果 本色14斗7升 作錢3錢5分. 『洞中年下記』와 『洞契傳掌記』를 살펴보면 還餘米는 臥還을 납부하기 위해 동중에서 결렴한 것이고, 租還과 牟還은 장흥부에서 환곡으로 분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1)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년 正月 日, 3兩減還戶事下.

102) 『洞中年下記』, 庚午年(1870) 3月 日 33兩統拔錢下, 辛未年(1871) 30兩 2月 26日 統拔給, 辛未年(1871) 4月 還錢收合錢42兩4錢5分 …… 56兩3錢4分臥還下, 辛未年(1871) 11月 20日 30兩統拔錢 下, 壬申年(1872) 11月 20日 35兩統拔下, 庚辰年(1880) 7월 60兩 還財通錢下. 이들 해에는 앞에 열거한 사례 외에는 환곡과 관련된 대규모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103)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3月 初3日, 初等租還 邑倉受去時2錢7分下.

104)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3月 初3日, 初等租還3石12斗2升內 孫寬默2石給 景甫1石給 12斗2升代5斗8升價 折錢8錢 汝化持去.



- ③ [公錢典授記] 初等 租還 3석 12두 2승 …… 11월 초6일 後木錢 3냥 3전 2푼과 拔錢 1냥을 해장에 납부함 …… 洞中公錢 畢納을 확인함.<sup>105)</sup>
- ④ 邑倉 租還 11石 내에서 2石은 作錢하고, 1石은 추수 후에 조로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慶實이 가지고 갔고, 2石 또한 그같은 조건으로 尹聖舉가 가지고 갔음. 4월 16일에 13두를 1兩 4푼으로 쳐서 士賢이 가지고 갔고, 同日 5두를 4전으로 쳐서 賣金이 가지고 갔음. 20두는 1兩 6전으로 쳐서 作錢하였고, 17두(七斗 두 글자를 곁어서 지웠는데, 애초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음 - 인용자 주) 3승은 1兩 3전 8푼으로 (값을) 쳤음. 空石 건은 即日 납부했음.<sup>106)</sup>
- ⑤ 이상 받아들인 米 72두 9승. 그 중에 26두로 還穀 2石을 납부함<sup>107)</sup>

위 5종의 기록은 1858년 연하기 곳곳에 흩어져 있다. 즉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위 자료로 보건대, 동중은 3월 3일에 환곡으로租를 틀림없이 받아왔다. 그런데 ①, ②, ③, ④를 함께 놓고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환 3석 12두 2승을 3월 3일에 수령하였고(①, ②), 그 후 상환하였다(③). 그런데 ④에서는 그해 조환이 11석으로 나온다. 1858년에 조환을 두 번 받았다는 뜻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자료 ④에서 해당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1석을 수령하여 작전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작전하고 빌려준 곡식은 모두 합해 7석 15두 3승이다. 11석의 7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는 어디 갔을까? 바로 3석 12두 2승이다. 양자를 더하면 11석 7두 5승이 된다. 장흥부에서 받아온 11석보다 7두 5승이 더 많다. 그래서 애초에 ‘十七斗三升’으로 썼다가 11석이 되도록 하려고 ‘七斗’ 두 글자를 곁들여 지웠던 것이다.<sup>108)</sup> 11석으로 맞추려면 ‘十七斗三升’을 ‘九斗八升’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왜 고치다 말았는지 알 수 없다. 아무튼 1858년 모산동은 11석 가운데 7석 7두 8승만 수령했던 것이다.

105)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公錢典授記』, 初等租還3石12斗2升 …… 11月 初6日, 后木錢3兩3錢2分 拔錢1兩 海倉給 …… 洞中公錢畢納 印.

106)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邑倉租還11石內 2石作錢 1石秋後以本色納上之意 慶實持去 2石亦以此意 尹聖舉持去 4월16일 13斗折價1兩4分 士賢持去 同日 5斗折價4錢 賣金持去 20斗折價1兩6錢作錢 17斗(7斗 두 글자를 곁어서 지운 흔적이 남아있음 - 인용자 주) 3升折價1兩3錢8分 空石段即日納.

107)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以上捧合米72斗9升內 26斗 還2石納.

108) 남아있는 획과 작전가를 종합하면 지운 두 글자가 ‘七斗’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동중은 자료 ②, ③에 등장하는 3석 12두 2승을 수령하지 않았다. 장흥 부는 모산동에 환곡을 분배할 때 11석 가운데 3석 12두 2승을 先控除하고 남은 분량만 주었던 것이다.<sup>109)</sup> 그런데 자료 ③에서 선공제된 3석 12두 2승을 ‘公錢’ [세금]이라 했다. 이는 선공제된 환곡 대부분이 지방재정에 충당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중 일부를 향리들이 사적으로 차지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1858년 모산동은 11석 가운데 7석 7두 8승만 수령했지만 상납할 때는 원곡 11석과 환곡 공식 이자율 10%를 적용한 이자 1석 2두까지 합해서 모두 12석 2두를 바쳐야 했다. 그렇게 되면 모산동이 받은 환곡의 실질 이자율은 63.7%가 된다. 당시 長利[고리대]의 이자율이 대체로 50%였고, 1858년 모산동 동계전의 이자율 또한 50%였던<sup>110)</sup> 상황에서 동민들이 연리 63.7%의 이자를 물고 환곡을 빌려 가려고 했을까?

실제로 동중이 주민들에게 환곡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일 때 연리 50%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중은 1874년 봄 22번에 걸쳐 還財米 68.27두를 수합했는데, 그 중 21번의 납부량은 “2月 初8日 學用 米 4斗9升5合”처럼 2[원곡 = 3.3두] + 1[이자 50% = 1.65두] 구조를 띤다. 즉 21회의 각 납부량을 2[원곡] + 1[이자분] 구조로 분해하면 두[2두 + 1두] 혹은 승[1두 + 5승] 또는 합[1두1승 + 5승5합] 단위로 정확히 끝난다. 우연히 이러한 구조를 띤다고 보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해 2 + 1 구조로 분해했을 때 대부분의 사례가 두, 승, 홉 단위로 정확히 끝난다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동중이 7석 7두 8승을 모두 빌려주었다면 그 이자는 3석 13두 9승이다. 합하

109) 1990년대까지 은행대출 관행을 보면 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행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비공식 수수료를 내고 정기예금을 들었어야 했다고 한다. 1980년대 기업대출 금리 대략 20%였는데, 그때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그 1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비공식 수수료로 내고,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정기예금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예금 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절반, 즉 10% 정도 되었다고 한다. 결국 기업은 7천만 원만 손에 쥘 셈이다. 1년 뒤 기업은 대출금 7천만 원,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 2천 2백만 원, 여기에 2천 8백만 원을 더해 1억 2천만 원을 갚았다.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2천 8백만 원이 되는 셈이다. 실질 금리는 연 20%가 아니라 40%였던 것이다.

110)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면 10석 1두 7승이 되는데, 이는 장흥부에 납부해야 할 12석 2두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그래서 동중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2석을 洞用으로 사용한(자료 ④) 후 미 26두로 그것을 갚았다(자료 ⑤). 여기서 동중이 5석 7두 8승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원곡과 이자를 합쳐 8석 1두 7승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동중은 조 4석 3승을 마련하면 12석 2두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동중은 租를 그만큼 납부하지 않고 자료 ⑤에서 보듯이 미 26두를 상납했다. 동중이 납부한 미 26두의 실제 가치는 조 70두(연리 75.0%)~80두(연리 100%)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후기 搗精率은 대체로 30~40%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세기 경상도 예천 박씨가와 도정율은 사례에 따라 25.7~40.6%로 큰 차이를 보이며 평균 32.4%였다.<sup>111)</sup> 조 80두[4석]를 방아에 넣어 쌀 26두를 얻었다면 도정율은 32.5%, 조 70두[3.5석]를 방아 찧어 쌀 26두를 얻었다면 도정율은 37.1%가 된다. 동중은 도정율을 그보다 더 낮게 잡았다. 환제를 결렬한 다음 전 일부를 作米·作錢도 했는데, 그때 조 1석의 가치를 미 1석의 29.2%로 계산했다.<sup>112)</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중이 조 40두를 사용하고 조 4석 3승[80.3두]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 26두를 납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동중이 사용한 조 2석의 실제 이자율은 100% 전후가 된다.

동중이 납부한 미 26두와 조 4석 3승[80.3두]의 실질적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향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장부정리를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복잡한 과정을 향리들은 간단히 처리했을 것이다. 즉 미와 조를 모두 作錢하여 錢으로 회계처리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정부, 동중, 각종 契는 실제로는 현물을 주고받고, 장부정리는 작전하여 錢으로 했던 것이다.<sup>113)</sup> 상황에 따라 作錢例를 조금씩 달

1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예천 맛질 朴氏家日記』 1~7, 1847/10/13(년/월/일), 1848/12/01, 1849/01/20, 1852/11/01, 1855/04/01, 1859/4/24, 1861/02/27, 1864/11/16, 1868/04/29, 1869/03/14, 1870/10/25, 1871/02/30, 1872/04/19, 1875/03/26, 1877/10/17, 1878/03/27, 1879/03/13, 1881/03/02/ 1888/03/16. 박씨가는 독특한 두와 승을 사용했는데, 동가에서 사용한 두와 승의 용적율은 3.3:1이다. 1871년 2월 “卅十日 朝雨始初 進士冒雨入本所 水碓春秬租 曝五石五斗 米卅七斗 解升九十刀.”

112)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還財分排記』, 8兩5錢6分 米2石10斗價 1兩2錢8分 租1石價下. 米 1石은 3兩4錢2分이 되고, 租 1石의 가치는 米 1石 가치의 29.2%가 된다.

리하면 장부정리는 더욱 쉬워진다. 앞서 보았듯이 1858년 동중이 미와 조 작전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동일한 곡물을 두고 동중과 동계가 작전례를 달리하였는데, 장부정리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한편 1870년대가 되면 신용 있는 사람들은 연리 50%의 환곡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다. 1874년 환곡을 받아 간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874년 봄 18명이 22번에 걸쳐 동중에 환곡을 납부했는데, 동중은 17명에 대해 學用처럼 이름만 적거나 韓千宗처럼 성명을 썼고, 단 1명만 택호로 기재했다. 모산동 여타 문서를 참고하면 전자는 下民, 후자는 上民이다. 19세기 후반 모산동에는 上民이 하민보다 훨씬 더 많았고, 上民 가운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sup>114)</sup> 이는 1874년에는 빈한한 上民들이 이자율 높은 환곡을 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당시 동계전의 이자율은 연리 40%였다.<sup>115)</sup> 동중은 모산동에서 환곡 분급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18명 가운데는 모산과 이웃하고 있는 浦谷, 墻內 마을 사람도 있다. 환곡을 받아먹고 야반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동중은 1858년에 米還도 받았다. 1858년 연하기에서 미환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⑤ 4월 초5일, 2等 米還을 南倉에 가서 받아올 때 3觔 지급.<sup>116)</sup>

⑥ 4월 초5일, 2等 米還 6석 13두 4승 내에서 金泰宗에게 1石을 주고, 任啓哲에게 2石을 주고, 金大錫에게 3석 13두 4승을 주었음.<sup>117)</sup>

⑦ 7월 초5일, 錢 米還 3석 14두와 錢 8兩 8전을 倉色에게 주었음.<sup>118)</sup>

113) 김건태, 2013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고문서연구』 43.

114) 1858년 『還財分排記』에 등장하는 경작자는 상민 29명, 하민 6명이다. 상민의 경작면적을 보면 5두락 미만 13명, 5두락 이상 ~ 10두락 미만 8명, 10두락 이상 8명이다.

115)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116)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4월 初5日, 2等米還南倉受去時 3觔下.

117)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4월 初5日, 2等米還6石13斗4升內 金泰宗1石給 任啓哲2石給 金大錫3石13斗4升給.

118)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7월 初5日, 錢米還3石14斗 錢8兩8錢 倉色給.

위 3종의 기록 또한 1858년 연하기 곳곳에 흩어져 있다. 즉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동중은 4월 5일 미 6석 13두 4승을 수령하여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7월 5일 米 3석 14두와 돈 8냥 8전을 창색에게 주었다. 동중이 갚아야 할 米는 원곡 133.4두와 이자 13.34두(이자율 10%)를 합쳐 146.74두이다. 동중은 7월 5일 미 74두와 8.8냥으로 그것을 갚았다. 미 72.74두(146.74 - 74)를 8.8냥으로 작전한 셈이다. 석당 2.42냥으로 작전한 셈인데, 이는 그해의 여타 작전가에 비해 매우 험한 값이다. 이해 연하기에서 확인되는 米 작전가는 4종인데, 석당 최저 3.18냥에서 최고 10냥까지이다.<sup>119)</sup>

무슨 이유 때문에 장흥부는 환곡을 회수할 때 작전가를 이렇게 험하게 책정했을까? 선공제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金大錫에게 준 3석 13두 4승(원곡의 55%)이 선공제된 분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金大錫이 곧 倉色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太還 관련 기록을 보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동중은 아래에서 보듯이 1858년에 太還도 받았다.

⑧ 太還 7두 4승 8홉을 倉色에게 주었음.

⑨ 錢 太 10두 6승 7홉과 1兩 7푼을 大錫에게 주었음.<sup>120)</sup>

米還 때 등장했던 대석과 창색이 또 나온다. 두 인물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위 자료는 문단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연하기 원문을 보면 자료 ⑧번 내용 아래 공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문단을 달리하여 자료 ⑨를 작성했다. 따라서 두 내용 사이에 시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⑧의 7.48두는 선공제된 분량이고, ⑨의 태 10.67두와 1냥 7푼은 전체 태환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장흥부의 환곡 선공제 관행은 19세기 여타지역에서도 있던 일이었다. 정약용은 환곡을 공제하는 관행을 半白이라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19)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6兩3錢6分米2石價 - 1석당 3.18兩, 8兩5錢6分米2石10斗價 - 1석당 3.42兩, 米4斗2升價2兩 - 1석당 9.52兩, 米6斗價3兩 - 1석당 10兩.

120)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4月 初5日, 太還7斗4升8合倉色給 錢 太10斗6升7合 1兩7分大錫給.

半白이란 천하에 원통한 것이다. 반 섬 곡식은 까닭 없이 아전이 훔쳐 먹고 반 섬 곡식은 그저 백성이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매양 頒糧하는 시기를 당할 때마다 권세 있는 아전과 부유한 아전이 촌 유지를 불려서 달래기를, “그대의 마을이 받아 가야 할 곡식이 40석인데 창고 속에서 축이 나고 겨와 쪽정이 섞여 있으므로 그것을 받아서 키질을 하면 20석도 되지 못할 것이다. - 그 반을 꺾은 것이다. - 거기다가 받아 가고 바치러 오고 하자면 이를 품을 버리고 色(간색미)·落(낙정미)·耗(모곡)·打(타점)이다. - 의 조로 몇 말이 더 붙게 되면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내게 한 계책이 있는데 그대에게 어떠한지?”하매 그 유지가, “무슨 계책이요? 오직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하면 그 아전은, “내가 지금 춘궁에 처해 있으니 약간의 손해를 어찌 피하겠는가? 그 40석을 모두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올 가을에 가서 그대가 그 반 - 20석 - 을 가져오고 내가 그 반 - 20석 - 을 내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색·낙·모·타의 조도 내가 맡는다면 내가 내는 것이 반이 넘을 걸세.” - 내는 것이 백성보다 많음을 이른다. - 한다. 그러면 그 유지는, “매우 다행입니다.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卷契 - 속칭 手記라 한다. - 가 이미 작성되면 그 유지는 돌아간다.<sup>121)</sup>

정약용이 말하는 반백은 와환과 다름없다. 주지하듯이 와환은 상납하지 못한 환곡을 받아 간다는 명분을 내세워 곡물을 분급하지 않고 수취한 것이다.

장흥에서는 1850년대부터 와환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와환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1876년 이후 동중에서 납부한 환곡은 대부분 와환, 즉 곡물을 분급받지 못한 채 오직 상납만 한 것이다. 실상을 보자. 동중은 1870년 ‘臥還’ 44.34냥, 1871년 ‘臥還’ 56.34냥, 1873년 ‘還錢’ 43.92냥, 1875년 ‘還上’ 52.39냥, 1876년 ‘還財’ 77냥, 1877년 ‘還納’ 53냥을<sup>122)</sup> 지출하였다. 1876년을 제외하면 지출 규모가 비슷한데, 이는 위에 열거한 지출이 모두 臥還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와환이 일반화된 시기에도 가끔 장흥부는 현물을 분급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74년 동중이 수합한 還財米 68.27두는 현물로 분급받은 환곡을 주민들에게 분급했다가 수취한 것이다. 한편 1870년~1877년 『洞中年下記』에는 환곡과 관련된 지출이 더 실려있다. 지출규모가 위에 열거한 양보다 훨씬 적은데, 현물로 분급된 환곡을 상납한 것으로 보인다.<sup>123)</sup>

121) 『목민심서』 『兵典』, 簽丁.

122) 1872년과 1874년 환곡량을 알 수 없음.

이같이 1870년대가 되면 환곡의 실상은 와환인데, 왜 와환이라 하지 않고 ‘還錢’, ‘還財’라고 했을까? 와환이 환곡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사람들은 還上하면 으레 현물을 분급받지 않고 상납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할당된 상납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는 그 미납분이 와환이 되는 것이다. 1893년 납부한 와환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1893년에는 1891년에 상납하지 못한 臥還과 그해 환곡을 함께 납부했다.<sup>124)</sup> 와환은 동중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동중은 와환에 대비하기 위해 1881년 亭子契를 창설하고 식리를 통해 계전을 불린 다음 ‘臥還 劃留(用)錢’이라 이름 붙여 동중으로 이전했다.<sup>125)</sup>

동중은 현물을 분급 받지 않고 상납만 하는 데 불만이 없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1858년 선공제된 분량이 조 3.5석, 미 3.5석, 태 0.5석 정도다. 1858년 선공제 분량은 1870년대 초반 환곡[와환]량과 비슷했다. 예컨대, 동중은 위에서 보았듯이 1871년 환곡[臥還] 56.34냥을 상납했는데, 이는 그해 작전가를 적용하면 조 8석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sup>126)</sup> 19세기 후반에는 환곡량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그림 6〉 참조), 그렇게 되면 공제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다시 말해 1870년대 초반 환곡량은 실물을 분급하던 1860년대 후반의 선공제량과 비슷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같이 실물을 분급하지 않고 수취만 한다는 차원에서는 선공제하는 것과 와환은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같다. 그래서 모산동, 나아가 인민들은 실물을 분급하는 환곡을 와환으로 대치할 때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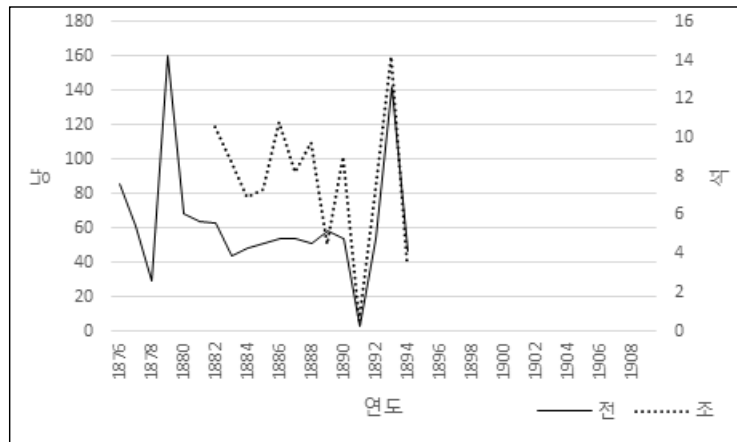
동중은 1876년부터 환곡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겼다(〈그림 6〉 참조). 환곡은 서서히 줄어들다가 1894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1879년과

123) 『洞中年下記』에서 확인되는 환곡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다. 庚午年(1870) 11月, 5兩5錢4分還財納; 辛未年(1871), 4兩臥還條加下, 11月 2兩還財加給下; 丙子年(1876) 5月, 7兩9錢4分還上納, 9月 (還財)5錢6分加下; 丁丑年(1877) 6月, 8兩3分牟還納.

124) 『洞中年下記』 癸巳年(1893) 11月 20日, 51兩6分還錢下 …… 91兩2錢5分臥還錢下.

125) 이용기, 앞의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 전환에 관한 시론』.

126) 『洞中年下記』 辛未年(1871), (米)26斗7升價17兩8錢, 2月 29日 (米)2石17斗7升價20兩1錢9分, 3月 2日 (租)2石17斗7升價 20兩1錢9分, 4月 14日 (租)12斗6升價 4兩4錢1分. 미작전가는 두 사례 모두 석당 13.33兩, 조 작전가는 두 사례 모두 석당 7兩이다.



〈그림 6〉 동중의 환곡 상납 현황

1893년 환곡 상납액이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는 한 해에 2년 치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1879년 두 번 상납했는데, 그 해 윤3월에 그 전해 환곡을, 12월에 당해 연도 환곡을 납부했다.<sup>127)</sup> 그리고 1893년에는 앞서 보았듯이 1891년에 상납하지 못한 臥還과 그해 환곡을 함께 납부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환곡 상납액은 18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곡은 군포와 달리 면[납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흥부에 납부했다. 동중은 조·모환은 읍창<sup>128)</sup>으로 미환은 남창[해창]<sup>129)</sup>으로 실어날랐다.

환곡은 1894년에 종말을 고하지만 그 기능이 일부 겹치는 社倉[還]制는 20세기까지 유지되었다. 앞서 환곡의 일종으로 파악한 別備米가 바로 사환미다.<sup>130)</sup> 사환 관련 기록은 1870년 연하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1882년까지는 거의 매년 나타난다. 장흥부는 사환미를 분급하지 않고 수취만 해갔다.<sup>131)</sup> 그래서 동중은 앞

127)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 閏3月 21日, 去年還財收合錢102兩5錢 …… 89兩7錢4分還錢下 …… 12月 日, 還錢收合87兩9錢5分果 …… 63兩3錢5分還納錢下.

128) 『洞中年下記』 甲寅年(1854) 12月, 邑倉租還20斗價1兩6錢; 邑倉牟還錢3錢5分.

129) 『洞中年下記』 甲寅年(1854) 12月, 5兩兩倉米還授去下. 『洞中年下記』 초기에는 '南倉'과 '海倉'이 함께 등장하다가 1882년 이후에는 '海倉'만 등장한다.

130) 『洞中年下記』 戊寅年(1878) 3月 洞中收合別米29斗, 19斗3升社還納, 2斗1升宗實下記條餘在7斗6升價6兩5錢. 동중은 별비미를 수합하여 그 대부분을 사환미로 납부했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別備米 납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869년 39명으로부터 미 108두를 수합하였다. 그런데 사환 관련 기록은 1883년부터 연하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00년에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낸다.<sup>132)</sup> 1883년 이후 사창제는 동 단위 공동납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장흥부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社庫契를 운영하고 있었는데,<sup>133)</sup> 사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전결세 상납

19세기 후반에도 전결세는 개별적으로 부담했다. 그래서 모산동 동답의 전결세를 대체로 작인이 부담했고, 어쩌다 동중이 상납했다. 즉 동답 전결세 관련 기록은 연하기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134)</sup> 연하기에 등장하는 전결세는 亡結과 관련된 것이다. 망결은 1905년 전라북도 남원에 살던 安時澤 등이 올린 請願書에서 보듯이 陳田이었다.

全羅北道南原郡〈居〉請願人 前參奉安時澤等 伏以本郡이 處在嶺湖之咽喉호야 各項應用이 倍蓰他郡호야 民斂이 浩煩故로 生等先長老가 出財拮據호야 買畝六十石落, 而收賭應用호야 郡民이 依保者三百年之久矣라. 其間의 浦落成川之畝이 爲二十餘石落 이온바 浦落結卜이 爲十四結十三負七束이 此所謂無亡結也라. 去丁酉良에 御使李承旭氏가 生等私藏之畝을 臆爲公土호야 勒奪放賣以去이거늘, 生等追慕先長老極力爲邑基業之意호야 艱辛辦備一萬六千兩호야 還買此畝, 則窮民情境이 果何如乎잇가? 不久庚子年에 自內藏院으로 不念如此之意由호고 此畝을 又爲執去호야 執賭, 而以二百五十石으로 元定호야 每年捧去이되, 畝之所屬無亡結十四結十三負七束을 自生等으로 責納호니 旣失其畝호고 添徵其結이 冤乎아 否乎아? 前後院府間所狀을 帖連仰陳호오니 照

131) 『洞中年下記』 庚午年(1870) 6月 12日, 4錢2分社庫米海倉下去路資下; 辛未年(1871) 11月 20日, 別備還餘米2斗5升內; 壬申年(1872) 秋, 2兩3錢9分別備還耗錢下; 癸酉年(1873) 別備米作錢條3兩9錢3分; 乙亥年(1875) 1月, 別備米24斗3升; 丁丑年(1877) 1月 17日, 2錢別備米事等狀路資下; 戊寅年(1878) 6月, 1兩別備米移運路費下; 庚辰年(1880) 1月, 1兩別備米運移時 駄價與路資下; 辛巳年(1881) 2月, 8兩7錢9分別備米作錢上納不足條下; 壬午年(1882) 11月 20日, 別備米 1石.

132) 『洞中年下記』 庚子年(1900) 11月 20日, 12兩社還價下.

133) 『洞中年下記』 丁丑年(1877) 11月, 4錢士玄社庫契利錢無利下.

134) 1870년 이후 연하기에 등장하는 동답 관련 기록은 다음 사례뿐이다. 庚午年(1870) 3月, 5兩2錢2分 洞畝所耕下; 丁丑年(1877) 1月 17日, 9兩洞畝4斗落所耕下.

亮호신후에 此畝을 還爲出給生等호야 永頌生成之澤호야 俾此遐土窮民으로 無至呼冤 抑苑之地, 千萬伏祝.<sup>135)</sup>

안시택의 조상들은 300여 년 전에 답 60석락을 매입하여 문중전답으로 삼았는데, 그 후 20석락이 홍수로 인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즉 14결 13부 7속이 陳田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안시택 등은 이 成川浦落된 14결 13부 7속을 無亡結, 곧 망결이라 했다.

위 청원서에 보듯이 내장원은 망결에서도 도지를 수취했다. 그들은 진전에서 수세를 하던 정부정책을 따라서 한 것이다. 장흥에 살던 鄭龍欽의 숙모는 陳結 5負 5束의 전결세를 매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그 전결세를 모산동중이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살던 초가 3칸과 집터를 1858년 동중에 넘겼다.<sup>136)</sup> 그런데 동중이 매년 납부한 망결세는 정용흠의 숙모가 소유했던 진전의 결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동중은 모산동 인근에 산재했던 無主陳田의 망결세도 부담했다.<sup>137)</sup> 장흥부는 안정적인 망결세 수취를 위해 각 마을에 망결계를 창설하도록 독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중은 망결세를 안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망결계를 운영하다가 1881년 동계와 합계했다.<sup>138)</sup> 고상면 傍村里도 1863년 망결전을 마련하고 식리활동을 하여<sup>139)</sup> 망결세를 납부했다.<sup>140)</sup>

135) 『각사등록』 21, 『全羅南北道各郡訴狀』 6, 光武九年九月□日 〈請願書〉.

136) 『亡結契傳掌記』, “咸豐八年戊午(1858)十二月初二日 洞中公事員 金尙益前明文 右明文事段 叔母主自己買得 累年生居是如可 將營移居 則草尾陳結五負五束年年當納爲難 故伏在 毛山村君字垵田七束鹿果 草家三間 價折錢文五兩五錢 買得右陳結五負五束 永永勿徵還意 納于洞中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以此文 告官下呈事 家垵主 幼學 鄭龍欽(手決) 證 幼學 魏義祚(手決) 筆 從弟幼學 鄭尙欽(手決).”

137) 『洞中年下記』, 丙子年(1876) 11月 2兩 亡結二卜6束 加出條, 丁丑年(1877) 1月 17日 亡結9卜2分下, 己卯年(1879) 3月 21日 49兩8錢 亡結下. 1879년 망결세 부과 대상은 매우 넓은 곳임을 알 수 있다.

138)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139) 『傍村里大同禊』 癸亥年(1863) 12月 15日, “亡結錢六兩四錢四分分定記 魏允基一兩利四錢 魏汶祚一兩利四錢 魏德基一兩利四錢 魏震錫二兩利八錢 鄭瓏.” 이후 몇 년간 식리활동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

140) 『傍村里大同禊』 丁卯年(1867) 十二月 講信, “亡結本錢二十六兩三錢一分并利三十六兩八錢三分內 五兩洞中下記下.”



〈그림 7〉 모산동과 하발동 전경

자료: 『朝鮮五萬分一地形圖』, 朝鮮土地調査局測量, 1918년 제작.

한편 동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下鉢 지역의 망결세를 부담하기도 했다.<sup>141)</sup> 모산에서 하발을 가려면 물 넘고 산 넘어 한참 가야 한다. 모산은 동북쪽에 있고, 하발은 동남쪽에 위치한다(〈그림 7〉에서 선으로 둘러싸인 곳임). 왜 멀리 떨어진 곳의 망결세를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했을까? 조선시대에는 동[마을]의 지리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집과 그 주변을 동이라고 생각했다.<sup>142)</sup> 즉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떨어진 곳은 洞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들[貝, 坪], ◇◇골[谷] 등이라 했다. 하발이 바로 ○○들, ◇◇골에 해당하는 곳이다. 누가 하발 지역의 망결세를 모산동에 부과했을까? 바로 남면이다.<sup>143)</sup> 다시 말해 망결세를 각 동으로 분배한 주체는 장흥부[군현]가 아니라 남면[면]이다. 예컨대, 이웃하고 있던 모산동, 浦谷洞, 牆內洞 사이에 ○○들[貝, 坪], ◇◇골[谷]이 여럿 존재했는데, 남면에서 그 일부를 모산동의 책임구역으로 결정했던 것이다.<sup>144)</sup>

141) 『洞中年下記』 丁亥年(1887) 2月, 4兩8錢8分 下鉢亡結面徵下. 동중은 1887년부터 1907년까지 하발 망결세를 부담했다.

142)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한국사론』 65.

143) 『洞中年下記』 丁亥年(1887) 2月, 4兩8錢8分 下鉢亡結面徵下.



〈그림 8〉 동중의 망결세 상납 현황

동중은 망결의 전결세뿐만 아니라 結頭錢도 부담했다. 주지하듯이 정부는 경복궁 중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865~1873년까지 결두전을 수취했다. 그런데 장흥부는 1874년 이후에도 결두전을 지속적으로 수취했다. 결두전이 정규세에서 무명잡세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장흥부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결두전을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洞亡添補錢, 洞亡官添錢, 洞亡錢利錢, 洞亡禮排錢 등으로 불렸던, 그야말로 이름 모를 무명잡세 여러 가지를 전결세에 추가하였다.<sup>145)</sup>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중이 상납한 망결세 및 그것에 추가된 무명잡세의 추이를 살펴보자(〈그림 8〉 참조). 상납액이 19세기에는 연도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만 1902년 이후에는 늘 고액이다. 1890년 하고동 망(결)세전과 1894년 하발 망결세전을 그해 동계의 작전례를 적용하여 조로 환산하면 각각 80두와 40두가 넘는다.<sup>146)</sup> 19세기 후반 장흥에서 기경전 1결의 전결세로 조 100두를 수취

144) 『洞中年下記』 己卯年(1879) 8月, 2兩8錢4分 洞亡結排錢下. 배전은 분배전이라는 뜻인데, 하발 망결세 자료에서 보듯이 분배주체는 남편이다.

145) 『洞中年下記』 庚寅年(1890) 1月, 4兩2錢2分 洞亡添補錢下, 3錢8分 洞亡結頭錢下, 25兩9錢6分 洞亡稅錢下, 4錢1分 洞亡官添錢下, 5錢4分 洞亡錢利錢下, 3錢3分 洞亡禮排錢下, 3兩 洞中結頭錢下.

146) 『洞中年下記』, 庚寅年(1890) 1月 25兩9錢6分 洞亡稅錢下; 甲午年(1894) 31兩8錢5分 下鉢亡結下. 동계는 조 1석을 경인년에 6兩, 갑오년에 13.5兩으로 작전하였다. 따라서 경인년 망결세는 조 87두, 갑오년 망결세는 조 47두로 환산된다.

했음을<sup>147)</sup> 감안하면 수세대상 진전이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진전에서 망결세를 매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취대상을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장흥부는 망결[진전]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亡結成冊]를 만들어<sup>148)</sup> 두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이 발생하거나 부세수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망결세 수취 대상을 크게 늘렸던 것이다. 이로부터 경작을 멈춘 지 백 년이 넘어 수풀로 뒤덮여 버린 진전과 成川浦 落되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진전을 양안에 등재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망결세 수취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 5) 기타 정규세 상납

호적전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호적전은 호적이 작성되는 해[式年]에만 상납했다. 즉 1878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상납하다가 신호적이 작성되는 1898년부터는 매년 납부했다. 호적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1898년부터 1907년까지 10년 동안 호적전이 12냥 2전 2푼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동중은 요역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지출을 했다. 馬草運役, 官瓦運, 鄉校曳木 등 이른바 官運力이 많을 때는 한 해 7차례나 되었다.<sup>149)</sup> 요역과 관련된 지출은 관운력에 나가는 役軍들을 위로하기 위한 술값이다. 동중이 상납한 雇錢도 적지 않았다. 노동력 징발 대신 징수하는 徭役價와 현물 대신 수취하는 貢物價를 통칭하여 雇錢<sup>150)</sup>이라 했다. ‘春等’, ‘秋等’으로 표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고전을 1년에 두 차례 납부했다.

이 외에도 동중은 雇馬錢, 空石價, 刷馬價, 濟毛租, 貢作米 등을 조금 부담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1879년 1호가 부담해야 할 고전의 액수는 별포전이나 승호

147) 김건태, 앞의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고문서연구』 43.

148) 『洞中年下記』, 甲申年(1884) 11月 20日 1錢亡結成冊紙價下, 癸巳年(1893) 11月 20日 3錢5分洞亡冊紙價下, 丁未年(1907) 11月 20日 1錢8分亡結成冊紙價下.

149) 『洞中年下記』 戊申年(1907).

150) 『南面補稷節目』 “道光 二十六年 十二月, 掘土鍊鏃節扇橋梁四件事已有傳令 不必更論 …… 救弊稷錢 …… 添補稷錢 …… 今補稷錢 …… 橋梁稷 …… 鍊鏃稷 …… 節扇價 …… 雇錢每戶五分式減 府內戶除.”

전보다 많았다. 당시 모산동은 11호가 호당 4전씩 고마전을 부담했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예컨대, 1855년 모산동은 9호가 고마전 1냥2전을 부담했다.<sup>151)</sup> 그런데 연하기에서 고마전 관련 지출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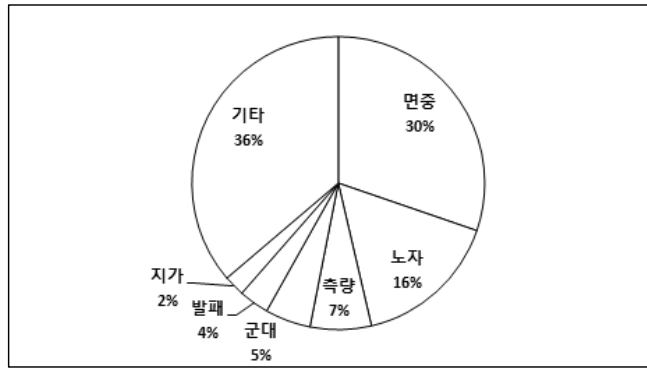
## 4. 잡세 및 인정류 지출

### 1) 잡세 및 부대비용

정규세와 잡세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여기서는 장흥부에 직접 납부하지 않은 부세를 잡세로 분류했다. 사실 면중에 납부한 돈은 그 상당 부분이 정규세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논지 전개 of 편의를 위해 그것을 잡세로 분류했다. 面中에 납부한 돈이 잡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그림 9〉 참조), 단일 항목으로는 鄉約契와 관련된 금액이 가장 많다(전체의 19.9%). 앞에서 보았듯이 1893년 장흥부는 각 면에 기금을 할당하여 향약계[청원계, 면계]를 중수하도록 하였다. 면중에 납부한 돈은 대체로 ‘面分排錢’, ‘執綱分排錢’, ‘面會排錢’, ‘各項面排’ 등의 명목으로 정리했다. 그 가운데는 각종 民庫 관련된 것이 적지 않았다. 민고는 앞에서 살펴본 화포계처럼 군현이나 면에서 운영하는 부세 관련 계인데, 19세기 들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장흥부도 그러한 흐름에 동승했다. 1845년 장흥부는 부에서 운영하던 補民稷을 중수했다. 전부터 내려오던 223.31냥에다 300냥을 더해 계전을 523.31냥으로 늘렸다. 그리고 1849년까지 연리 30%로 식리를 하여 1,500냥을 모은 다음 그 이자로 檜柄木, 柚子, 靑火竹 등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계획했다.<sup>152)</sup> 그때 중수로 남면의 부담도 늘었다. 남면

151) 『洞中年下記』 乙卯年(1855) 11月 20日, 雇馬錢 9戶 1兩2錢.

152) 『南面補民稷追節目』 乙巳年(1845) 5月, “補民稷 前在錢二百二十三兩三錢一分 今補錢三百兩 合錢五百二十三兩三錢一分是齊 本面補民稷 前在錢貳拾壹兩捌分 今補錢貳拾兩玖錢貳分 合錢三十肆兩 一 稷錢 講信依舊例每年二月初一日 八月初一日定行 利十三利取殖是矣 自今乙巳年六月 計至己酉八月日 本錢并利條當爲一千五百兩 而庚申爲始除其本錢 取其利條 則當爲四百餘兩是如乎 各營門檜柄木 戶曹求請柚子價遣上 靑火竹等 結斂隨時除減下 取用於契錢利條 以爲救弊是齊.”



〈그림 9〉 동중의 잡세 상납 및 부대비용 지출 내역(단위: 냥)

은 기존 21.08냥에 12.92냥이 더해짐으로써 34냥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다. 1846년 12월 기존의 救弊·添補·今補·橋梁·鍊鏃·節扇價稷를 하나로 통합하여 마련한 1,635.94냥을 기금으로 掘土·鍊鏃·節扇·橋梁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민고를 창설했다. 이어 月利 3%를 적용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294.47냥을 수합했다. 그 후 293.3냥을 雇錢에 충당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호당 5분씩을 감해줄 수 있었다.<sup>153)</sup>

장흥부는 각 면이 주관하는 민고도 운영했다. 1834년 9월 장흥부는 1,033.2냥을 마련하여 호당 0.153냥씩으로 계산하여 각 면에 분배하고 면마다 부요한 3인을 별유사로 차정하여 면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별유사가 계전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집장이 군현에 보고토록 했고, 戶房色吏에게 면계문서를 면밀히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때 남면은 813호에 해당하는 124.39냥을 분배받았다.<sup>154)</sup> 1847년에는 어사가 巡營主人과 장흥부 향리로부터 查出한 1,600냥을 각

153) 『南面補稷節目』 “道光 二十六年 十二月, 官到任後 出給民間錢 合爲一千一百十九兩四錢矣 掘土鍊鏃節扇橋梁四件事已有傳令 不必更論 …… 救弊稷錢 …… 添補稷錢 …… 今補稷錢 …… 橋梁稷 …… 鍊鏃稷 …… 節扇價 …… 已上錢一千六百三十五兩九錢四分 六月及十二月 日 講信 利二百九十四兩四錢七分來丁未六月至每朔三分利 內二百九十三兩三錢 雇錢每戶五分式減 府內戶除 在一兩一錢七分.”

154) 『長興府南面補民稷節目』 辛卯年(1834) 9月, “一千三十三兩二錢分排於各面民戶六千七百四十七戶 則每戶錢爲一錢五分三厘 故分給各面富饒別有司三人等處 作爲面稷是齊 …… 南面八百十三戶 錢一百二十四兩三錢九分內 …… 一 稷錢捧上之時 別有司若拘顏私 本錢與利錢不爲捧上 紙上空文欲作分授是去等 面執綱卽爲報來 以爲嚴治捧上是齊 …… 一 各

면에 분배한 다음 存本取殖하여 각종 경비에 충당토록 하였다.<sup>155)</sup> 194냥을 분배 받은 남면은 각 동에 그것을 다시 분배하고 이자를 징수했다.<sup>156)</sup> 이 돈을 받은 모산동은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수사계를 창설했다.<sup>157)</sup> 이렇듯 민고는 19세기 마을 단위의 각종 목적계가 활성화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19세기 후반이 되면 면이 행정체제에서 그 실체를 뚜렷이 했다. 즉 19세기 후반부터 개별 동은 군현과 면의 지배를 동시에 받게 되었던 것이다. 면분재전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의 행정적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분배전 납부 횟수를 10년 단위로 정리해보면 1880년대 12회, 1890년대 21회, 1900년대 38회다.

부세와 관련된 부대비용에서 路資도 적지 않은 비중을 점했다. 노자는 부세출납, 각종 呈訴 등으로 洞人이 읍과 倉庫를 오갈 때 든 비용인데, 1냥 이하가 194회 가운데 139회이다. 노자는 대부분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인 점심 값으로 보인다. 路資에는 가끔 인정이나 관속들의 접대비도 포함된 듯하다. 예컨대, 1888년 公錢을 수납할 때 노자로 4.5냥을 지출했는데,<sup>158)</sup> 동중은 이해 벼 1석을 5.25냥으로 작전했다. 洞人들의 음식값으로는 너무 큰 액수다. 노자 다음은 측량비인데, 광무양전 때 동중이 부담한 것이다. 군대 관련 지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항목의 86.3%가 1909년 한 해에 지출되었는데, 모두 日兵과 관련된 것이다. 병영을 대신하여 일본군이 兵站所를 설치하고 부대유지 비용 일부를 민간에 전가했던 것이다.

단일 항목으로 發牌와 관련된 지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한다. 장흥부는 부

面面稷文書照檢 一疑戶房色吏舉行是齊 行府使李.”

155) 『長興府各人等查徵錢出給各面救弊節目』南面 丁未 九月 日, “巡營主人及吏鄉之犯科偷弄者 按簿查出略捧一千六百金 …… 其量宜分給於各面 以爲存本取殖 補弊釐瘼之資 …… 南面五百六十五戶 錢一百九十四兩.”

156) 『洞中年下記』, 甲寅年(1854) 御使查徵利錢亡丁掇弊條 1兩2分(下); 乙卯年(1855) 11月 20日, 繡查分排錢5兩5錢 …… 3錢繡查錢利條無利下; 丁巳年(1857) 3錢8分繡查錢利條與利下 …… 繡查錢5兩5錢(入); 戊午年(1858) 正月 日, 4錢繡查錢無利下 …… 正月 晦日, 繡查錢5兩5錢(入) …… 繡查錢無利2錢8分(下) …… 3錢1分村中繡查錢利錢無利下.

157)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면중에서 받은 돈을 기금으로 동중은 식리활동을 했는데, 이를 수사계라고도 하고 단순히 수사전이라고도 했다.

158) 『洞中年下記』 戊子年(1881) 1月, 4兩5錢公錢收納路資下.



세를 부과·징수할 때 牌旨를 발부했는데, 패지를 받아올 때 발급 실무를 맡은 읍주인[사령]에게 약간의 돈을 건넸다.<sup>159)</sup> 액수는 최저 1전에서 최고 3냥8전까지 다양하지만 그 대부분은 1냥 이하의 소액이다.<sup>160)</sup> 그런데 그것을 ‘發牌債’<sup>161)</sup>, 곧 ‘빚’으로 인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건네야 하는 돈이었다. 人情的 일종이라 할 수 있다.<sup>162)</sup> 한편 각종 紙價가 단일 항목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한다. 1회 지출은 1전에서 4냥2전까지 다양한데, 그 대부분은 1냥 이하 소액이다.<sup>163)</sup> 衿記, 亡結成冊 등과 같은 전결세 관련 지가가 2/3를 차지한다.<sup>164)</sup>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지출은 매우 다양<sup>165)</sup>하지만 연하기에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극히 일부다. 그런 가운데 社庫[社倉] 관련 지출이 자주 눈에 띈다. 사창제 설립 초기 장흥부는 사환미를 기존의 海倉에 보관했다.<sup>166)</sup> 그러다가 1878년 여름 장흥부는 사고를 새로 짓고 落成式을 성대하게 치렀는데, 그 비용 일부를 각 동에서 각출하였다.<sup>167)</sup> 그 이후 사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각 동에서 징수했다. 그래서 동중은 수리비와 飛蓋價를 수시로 상납했다. 연하기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15회 등장한다. 한편 사고와 달리 예전부터 장흥부의 중심 창고 역할을 했던 邑倉과 南倉[海倉] 유지비용은 개별 동에 배당되지 않았다.<sup>168)</sup> 두 창고 유

159) 『洞中年下記』 丙子年(1876) 5月, 1錢6分邑主人發牌時給.

160) 『洞中年下記』에 33회 등장하는데, 그중 2회는 1兩 이하이다.

161) 『洞中年下記』, 乙卯年(1885) 11月 20日 1兩公錢發牌債下; 癸巳年(1893) 11月 20日 2兩還錢發牌債下, 8錢發牌債下.

162) 『洞中年下記』 乙亥年(1857) 11月, 1兩還財代納時人情雜費下.

163) 『洞中年下記』에 31번 등장하는데, 그중 22회는 1兩 이하이다.

164) 『洞中年下記』에 31번 등장하는데, 그중 22회가 전결세와 관련된 것이다.

165) 監使碑錢, 古邑兵站所, 鼓廳錢, 官燈廁竹價, 官伐木價, 官碑錢, 官需米, 官藥價, 官祭價, 官筆價, 校助錢利, 南倉修理, 洞亡破船米, 量費錢, 兵使碑錢, 兵營作廳重修錢, 本官碑錢, 本官願錢, 烽臺分排, 書閣雇戶分排, 書員筆價, 守直布價, 巡相碑錢, 新結事, 瓦分排錢, 印察紙價, 日兵所鷄價, 種樹尺量, 中大將單子, 斥邪碑閣, 銃貫, 銃調查, 學校錢, 海倉修井單子, 海倉藥價, 鄉校脯牛代錢, 興陽堰防錢.

166) 『洞中年下記』 庚午年(1870) 6月 12日, 4錢2分社庫米海倉下去路資下.

167) 『洞中年下記』 戊寅年(1878)년 6月, 9錢 社庫落成酒價下.

168) 『洞中年下記』 丁丑年(1877) 11月 20日 5錢7分南倉修理下. 동중은 1877년에 남창 수리비로 한 차례 지출했을 뿐이다. 이때는 사환미를 남창에 보관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개별 동에 할당된 것으로 보인다.

지보수비는 정규재원에서 충당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사환이 장흥부의 ‘일반 제정’에 속했던 환곡과 그 운영방식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 2) 관속 접대

주지하듯이 人情은 관속들에게 건네는 재화[현물, 현금]를 일컫는다. 동중에서도 부세를 상납할 때 관속들에게 인정을 건넸다.<sup>169)</sup> 여기서의 민간[사람, 사찰]에 재화를 건넨 것도 묶어서 분석하기로 한다. 크게 보아 求請[요청]類와 役只[접대]類로 나눌 수 있다. 求請, 求乞, 救弊, 揀拔, 羅家稅, 勸善, 例給, 路資, 面長紙價, 동 외부로 보낸 부조 등을 구청류로 분류하였다. 求請, 求乞, 救弊, 揀拔 등은 비슷한 뜻이다. 동중은 羅家稅<sup>170)</sup>와 勸善<sup>171)</sup>을 구청으로, 面長紙價<sup>172)</sup>를 면장구페로 쓰기도 했다. 그리고 동 외부로 보낸 부조는 권선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예컨대, 돈을 서원에 보내면 扶助, 사찰에 주면 권선이라고 했다.<sup>173)</sup> 이 외에도 내용상 구청류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sup>174)</sup> 약간 더 있다. 面長救弊를 面長紙價로 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중은 구청을 잡세로 인식하기도 했다.

役只는 接只,<sup>175)</sup> 接費<sup>176)</sup>로 쓰기도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접대’라는 뜻이다. 役只에는 술, 음식 등과 같은 음식비뿐만 아니라 현금도 포함되었다.<sup>177)</sup> 役

169) 『洞中年下記』 乙亥年(1875) 11月, 1兩還財代納時 人情雜費下.

170) 『洞中年下記』 丁亥年(1887), 4兩 春等邑主人羅家稅下, 4兩秋等邑主人求請下.

171) 『洞中年下記』, 庚子年(1900) 11月 20日 3峯長房廳春等求請下; 辛丑年(1901) 11月 20日 2兩長房廳勸善下; 壬寅年(1900) 11月 20日 2兩長房廳求請下.

172) 『洞中年下記』 甲辰年(1904) 11月 20日, 2兩春等面長求弊下, 2兩秋等面長求弊下; 乙巳年(1905) 11月 20日, 2兩面長紙價下, 2兩 面長紙價下. 면장에게 1904년까지는 춘추로 2兩을 주면서 구페라고 했는데, 1905년부터는 紙價라 했다.

173) 『洞中年下記』 庚寅年(1890) 1兩2峯寶林寺勸善下 …… 9峯路江書院扶助錢下.

174) 別下, 別請, 加出, 別求請, 別給, 別善, 再徵, 不明. 이 항목은 ‘求請別下’처럼 구청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求請 대상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175) 『洞中年下記』, 甲午年(1894) 11月 20日, 5兩6峯5分 監坪書員 役只下; 丙申年(1896) 11月 20日 2兩8峯 監坪書員 接只下. 이같이 지출의 성격이 동일한데, 役只 또는 接只라 썼다. 접대와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役只라 썼고, 1895년부터 가끔 接只라고 쓰기도 했다.

176) 『洞中年下記』 己丑年(1899) 1月, 2兩5分官砲接費下, 3兩5峯5分官砲役只下. 1909년까지 ‘接費’는 한 번 나온다.

177) 『洞中年下記』 辛卯年(1891), 1兩9峯8分監坪書員役只下 1兩課鷄下. 서원에게 돈 1兩9峯8

지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다. 檢督, 官砲手, 道人, 色吏, 書員, 署長, 從事人, 鄉約人 등<sup>178)</sup>과 같이 일정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썼다. 예컨대, 監坪書員을 따라온 하인에게 돈을 주고서 '路資', '別下', '給'이라고 썼다. 동중은 특정인에게 한낱한시에 재화와 접대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구청과 역지로 구별했다.<sup>179)</sup> 그런데 역지에도 현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1888년 서원 역지에 5냥 2전 5푼을 사용했는데, 음식 장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지비가 그해 벼 1석 작전가와<sup>180)</sup> 같기 때문이다. 한편 그 때 서원을 따라온 하인에게는 1전을 주었다.<sup>181)</sup> 동중이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일상생활에 신분제가 녹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중은 34년 동안 878회에 걸쳐 1971.83냥을 인정으로 지출했다. 1회 2.25냥, 연 25.9회, 연평균 58.11냥 정도 되는데, 이를 벼로 환산하면 값이 싼 해에도 몇 섬에 해당한다. 인정을 받은 대상을 보면 관속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민간(사람, 사찰 등), 面中 순이다(<그림 10> 참조). 매우 다양한 관속이 인정을 받았는데, 대체로 장흥부 소속이고, 아주 드물게 서울, 청주, 광주, 나주 등지 사람도 있었다.<sup>182)</sup> 동중은 다양한 외부세계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속 중에 邑主人이 가장 많은 인정을 받았다(<그림 11> 참조).

分을 건네고, 접대 음식비 1兩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洞中年下記』는 대체로 '용돈'과 음식비를 합산하여 役只로 회계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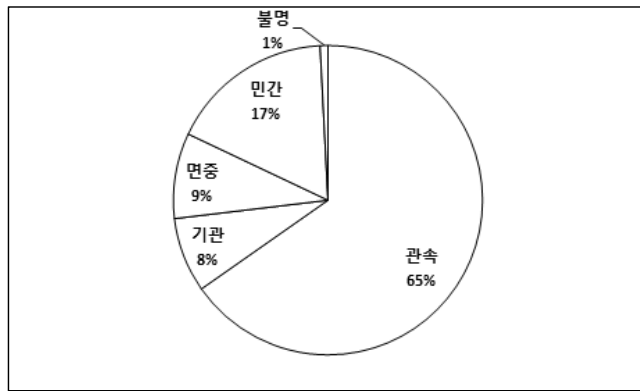
178) 『洞中年下記』 辛巳年(1881) 11月, 1兩4錢3分軍布檢督役只下; 辛巳年 2月, 9錢官砲役只下; 甲午年(1894) 11月 20日, 80兩8錢道人役只下; 丙子年(1876) 7月, 1兩5錢5分未移色吏役只下; 丙子年(1876) 7月, 7錢6分看坪書員役只下; 戊申年(1908) 11月 20日, 1兩8分署長役只下; 己酉年(1909) 11月 20日, 13兩2錢從事人接只下; 癸巳年(1893) 11月 20日, 9錢5分鄉約役只下.

179) 『洞中年下記』 己丑年(1889) 1月, 3兩3錢5分水西高先達求請與役只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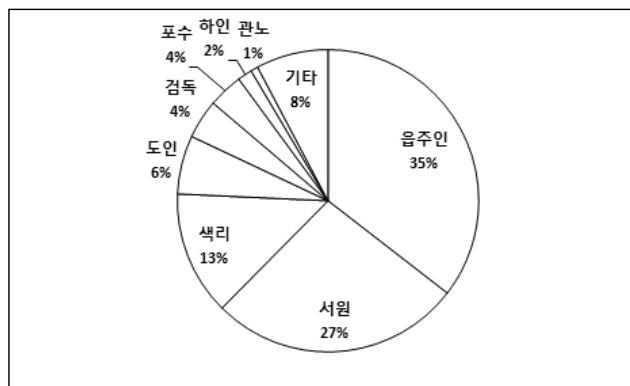
180) 『洞契傳掌記』 戊子年(1888), 租2石價10兩5錢洞用下.

181) 『洞中年下記』 戊子年(1888), 5兩2錢5分書員役只下 1錢書員下人給.

182) 『洞中年下記』 丙戌年(1886) 2月, 7錢清州兵營獵蹠路資下; 己亥年(1899), 1兩光州使令路資下; 丙申年(1896) 11月 20日, 2兩羅州巡檢求請下; 庚寅年(1890) 1月, 3錢左水營吏求乞下; 壬寅年(1902) 11月 20日, 1兩京大殿別監求請下; 癸卯年(1903) 11月 20日, 2兩御吏從人求乞下.



〈그림 10〉 인정 제공 내역(단위: 냥)



〈그림 11〉 관속에게 제공한 인정 내역(단위: 냥)

일찍부터 읍주인[使令]에게 봄에 보리 1석 전후,<sup>183)</sup> 가을에 조 1석 전후를 羅家稅[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sup>184)</sup> 그러다가 1879년 가을 모산동과 사령청은 현물 대신 錢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都使令은 합의사항을 다음과 같은 한글 문서로 남겼다.

183) 『洞中年下記』 戊寅年(1878) 6月, (牟)24斗邑主人羅家稅給; 己卯年(1897) 6月 15日, (牟)1石邑主人羅家稅給.

184) 『洞中年下記』 丙子年(1876) 11月, 6兩邑主人羅家稅 租1石代錢下. 전후 문맥을 보면 조 1석을 현물로 지급하고 작전하여 회계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남하 모산 읍주인 나가세 춘추전 4냥식 우에 더하거던 이피로 밋고사라 기묘 10월 초2일 도사령 金(수결).

모산동은 나가세로 1880년에는 봄, 가을 각 3냥만 지급했지만 1881년부터 1902년까지는 매년 8냥씩 주었다. 양측의 합의는 1903년에 깨졌다. 사령청이 물가인상분을 나가세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듯하다. 동중은 사령청의 갑작스런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가 1904년에 가서야 1903년 나가세조로 17냥을 지급했다.<sup>185)</sup> 동중은 사령청의 요구를 끝내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1904년부터 매년 봄 가을에 각 19냥을 읍주인 나가세 명목으로 지출했다.<sup>186)</sup>

읍주인 다음으로 많은 인정을 받은 관속은 서원이다. 서원이 모산동을 방문하면 동중은 그들을 각별하게 대접했다. 서원은 대체로 1년에 두 차례 방문했는데, 여름(음력 6~7월)에 監坪書員이, 늦가을이나 겨울(음력 9~12)에 考卜書員이 찾아왔다. 통상 서원이 오면 술과 닭 요리가 차려진 상을 차리고, 갈 때는 '돈'도 두둑이 건넸는데,<sup>187)</sup> 감평서원에 비해 고북서원을 훨씬 더 융숭하게 대접했다.<sup>188)</sup> 전결세량을 결정하는 데 고북서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다.

19세기 전결에 대한 課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작황실태, 즉 年分은 稍實(3/4 수확), 之次(1/2 수확), 尤甚(1/4 수확) 등 3종류였고 연분을 파악하는 단위는 면이었다. 감평서원이 하는 일이 바로 작황조사였다. 감평서원의 보고를 토대로 장흥부사는 급재결수를 계산하여 전라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감사는 산하 각 군현의 급재결수를 종합하여 호조에 給災를 신청했다. 호조는 도별로 元摠과 그 해의 풍흉에 상당하는 연도의 실총을 비교하여 당해연도의 實摠과 災摠을 확정하여 각 도에 事目을 발급했다. 이때가 대체로 음력 7월

185) 『洞中年下記』 甲辰年(1904) 11월 20日, 17兩邑主人羅家稅去年條下.

186) 『洞中年下記』 甲辰年(1904) 11월 20日, 19兩春等邑主人羅家稅下 19兩秋等邑主人羅家稅下.

187) 『洞中年下記』 乙亥年(1875)년 11월, 2斗考卜時 酒米與粥米下; 丁丑年(1877) 6月, 1兩5分監坪書員餽鷄價下.

188) 『洞中年下記』 甲申年(1884) 11월 20日, 1兩9錢5分監坪書員役只下 4兩3錢9分考卜書員役只下.

~9월 경이었다. 전라도는 호조가 하달한 事目災結과 實摠外結數를 감안하여 군현별 급제결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sup>189)</sup> 장흥부가 감사가 내려준 災結을 바탕으로 면별 급제결수를 결정하면 남면 고복원은 부사의 災結을 토대로 개별 필지의 결부수를 확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개별 필지의 출세 결부수는<sup>190)</sup> 고복서원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이다.

色吏도 동종의 접대를 많이 받았는데, 색리 명칭이 매우 다양했다.<sup>191)</sup> 計家色吏들이 자주 접대를 받았다. 동종이 납부하는 부세 대부분이 호적에 근거해 그 세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호적작성과 직접 관련된 계가색리들을 후하게 대접했던 것이다. 동종은 道人[동학농민군]을 단 한 차례 접대했는데, 그때 비용이 무려 80냥 8전이 들었다.<sup>192)</sup> 그해 동계 작전가<sup>193)</sup>를 적용하여 벼로 환산하면 6석이 넘는다. 모산동이 자발적으로 거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농민군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독도 여러 차례 대접했다. 軍布檢督, 公錢檢督, 臥還檢督, 還錢檢督 등의 명칭으로 보아 부세 업무와 관련된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동종의 접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병영소속도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砲手다. 왜 포수들이 모산동을 방문하였고, 동종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을 접대했는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병인양요 이후 砲軍 확대정책에 힘입어 그들의 입김이 전보다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주병영 소속 獵獮軍도 자주 접대했다. 수달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모산동에 들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왜 동종이 그들을 대접했는지는 알 수 없다.

189) 이철성, 1993 『18세기 전세 비총제의 실시와 그 성격』 『한국사연구』 81.

190) 고복서원은 매년 개별 필지의 결부수를 산정했는데, 1880년대 경주부 행심책을 보면 필지별로 매우 정밀하게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 소장 『慶尙北道慶州郡量案』(古大 4258.5-17a, 17b, 17c) 참조.

191) 計家色吏, 飢戶色吏, 軍布色吏, 番頭色吏, 未移色吏, 碑閣伐木色吏, 社還米分給色吏 등. 동일한 업무를 관장하는 색리를 다르게 호칭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計家色吏는 戶籍色吏, 戶籍傳來使로 칭하기도 했다.

192) 『洞中年下記』 甲午年(1894) 11月 20日, 80兩8錢道人役只下.

193) 『洞契傳掌記』 甲午年(1894), 1石16斗5升 13兩5錢例作錢 24兩6錢洞用下. 작전가는 1석당 13.5兩이다.

## 3) 관청유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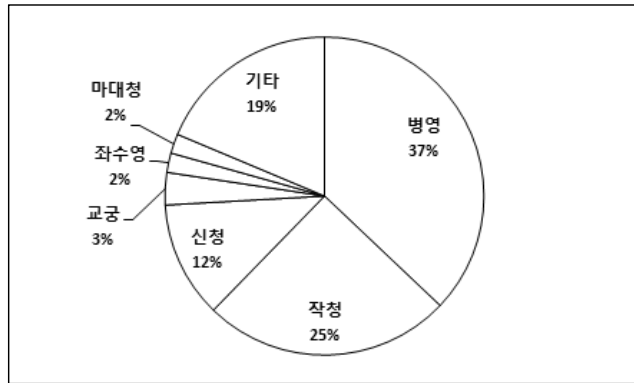
동중은 康津兵營 소속 기관(長房廳, 五房), 장흥부 산하 기관(作廳, 神廳, 官奴廳, 刑房廳, 海倉), 京畿 北漢山城, 淸州兵營 獵房, 全州 使令廳, 光州 馬隊廳, 光州 奉公廳, 左水營 등에 인정을 제공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장흥 바깥에 소재하는 기관들에 인정을 건네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중이 무방비 상태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중이 인정조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낸 기관은 병영이다(〈그림 12〉 참조). 대부분 인정을 長房廳에 주었는데, 68회 중 60회를 그곳에 주었다. 적게는 0.2냥에서 많게는 4냥까지 주었으며 1회 평균액은 0.75냥이다. 60회 중 41회는 0.5냥 미만인데, 특히 0.2냥(6회) 또는 0.3냥(21회)을 건넨 경우가 많다. 동중이 장방청에 보낸 인정에 대해 春等, 秋等, 別下 등으로 구분한 사실로 볼 때 1년에 두 차례 정례적으로 인정을 제공했던 것 같다.

동중은 장흥부 作廳에도 여러 차례 인정을 건넸다. 인정을 春等, 秋等, 例給, 別下 등으로 구분한 사실로 볼 때 1년 두 차례 보내는 것으로 양측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군포를 봄가을 두 차례 나누어 상납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한 번에 적게는 0.1냥에서 많게는 5냥까지 모두 55회 보냈다. 그중 0.5냥을 건넨 것이 무려 31회다. 작청에 보낸 인정은 동일 액수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모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동중이 정액을 정례적으로 작청에 건넨 것을 볼 때 그 돈은 契防과 관련 있는 듯하다. 당시 장흥에는 계방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예컨대, 장흥부 古邑面 鶴橋洞은 1년에 춘추 각 1냥씩 계방 명목으로 지출했다.<sup>194)</sup> 1778년 李燾은 계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4) 『上下契補上記』 己卯年(1879) 12月 24日, 1兩風憲契防入 并利1兩2錢5分; 庚辰年(1880) 12月 日, 1兩2錢契防加給, 1兩辛巳春等契防下.



〈그림 12〉 기관에 제공한 인정 내역(단위: 냥)

이른바 契防의 폐단이란 마을 안의 부자 백성이 관리와 결탁하여 물건을 내어 和同하면서 이름을 계방이라고 하여 軍役을 모면하려는 묘한 방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徭役에 관계되는 것들을 전적으로 그들이 맡게 되어 괴로운 탄식을 면치 못해 종종 流離하여 도망하는 것은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각도 각읍으로 하여금 이런 폐단을 조사해 찾게 하여 이른바 계방이란 명목을 일체 폐지하여 제반 雜役을 通融해서 하게 하면 가난한 戶口만 유독 혹독하게 하는 폐해가 없게 되어 聖朝의 동일하게 보는 혜택을 고루 입을 것입니다.<sup>195)</sup>

계방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부민이 免役, 면세를 위해 참여했으나 동단위 공동납이 활성화된 19세기 후반에는 동중이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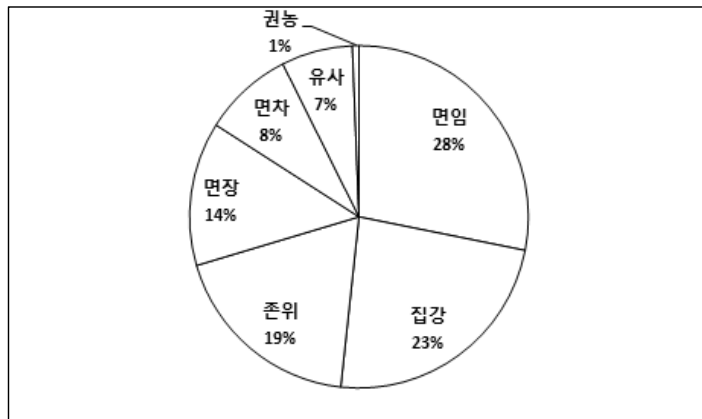
#### 4) 면중 유지 비용

동중은 尊位, 勸農, 面任, 執綱, 面有司, 面長, 面差 등에게 적지 않은 돈을 건넸다(〈그림 13〉 참조). 이 가운데는 同職異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면임은 준위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면임과 준위는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받은 인물인데, 1884년을 제외하면 한 해에 면임과 준위에게 동시에 구청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sup>196)</sup> 동중은 준위와 면임에게 ‘춘등’, ‘추등’, 즉 1년에

195) 『備邊司謄錄』 159책, 正祖 2년 6월 5日.

196) 『洞中年下記』 甲申年(1884) 11月 20日, 2兩尊位求弊下 …… 2兩面任秋等求弊下.





〈그림 13〉 면중에 제공한 인정 내역(단위: 냥)

2회 지급한다고 밝혀 두었고, 1회 금액은 2냥이었다. 대체로 1년에 두 차례, 1회 2냥씩 지급했다. 한편 勸農과 관련된 기록은 연하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단 1876년 이후 연하기에서 권농은 3번 등장한다.

執綱, 有司, 면장 또한 계통을 같이 한다. 집강은 1899년까지만 등장하는데,<sup>197)</sup> 그에게 1년에 두 차례 돈을 주고, 그것을 ‘路資’라 했다. 1899년에는 춘추로 각 2냥을 지급했다. 집강은 作夫에 관여하기도 하고,<sup>198)</sup> 각 동에서 수합한 여러 부세를 장흥부에 납부하는 일을 주관하기도 했다.<sup>199)</sup> 아래 남면 補民契節目은 집강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다.

(1845년) 『남면보민계절목』: 일. 各面 執綱 중에 有司를 차정하여 出納을 살피도록 하되, 만일 逋欠하는 폐단이 있으면 작은 것은 면에서 嚴懲하고 큰 것은 군현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돈을 나누어 줄 때 疎漏하게 하여 모두 없어지는 폐단이 없게 할 것.<sup>200)</sup>

197) 집강은 1892년까지 등장하고, 1893년부터는 유사(유사)가 나온다. 이들에게 노자를 지급하는데, 1897년 이후 항상 1회에 2兩을 주었다.

198) 『洞中年下記』 丁丑年(1877) 1月 17日, 6分執綱作夫路資下.

199) 『洞中年下記』 辛巳年(1881) 4月, 1兩執綱公錢納馱價下.

200) 『南面補民契節目』 “一 各面執綱中 擇定有司之任 使之照檢出納是矣 萬一有犯逋欠縮之弊是去等 小而自官嚴懲 大而報營勸處 俾無分錢疎漏乾沒之弊是齊.”

(1846년) 『남면보민계절목』: 일. 講信 일에 稷錢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관에 보고한 후 받아들이고, 別有司 중에 사망한 자가 있으면 해당 면의 執綱이 勤幹富實한 사람을 선택하고 보고하여 (죽은 이를) 대신하게 할 것.<sup>201)</sup>

(1846년) 『남면보민계절목』: 일. 稷錢을 받아들일 때 有司가 안면에 엮매여 本錢과 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서상으로만 주고받으려고 한다면 面 執綱이 즉시 보고하여 嚴治하고 받아들일 것.<sup>202)</sup>

위에서 보듯이 면마다 2명 이상의 집강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을 보민계 유사로 선정했다. 유사로 차정된 집강은 별유사를 추천하여 그들과 함께 보민계전을 관리하였다. 집강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民庫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하기에서 집강은 1899년까지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데 비해 유사는 1900년 처음 등장한다. 동중은 그에게 봄, 가을 각 2냥씩 주면서 집강에게 했던 것처럼 ‘路資’라 했다. 그런데 유사 또한 1902년까지만 등장하고 사라진다. 1903년부터는 면장이 나오는데, 그에게도 춘추로 각 2냥씩 지급했다. 면장에게 준 돈을 1905년까지 ‘求請’ 혹은 ‘路資’로 표기하다가 1906년부터 ‘紙價’라고 썼다. 면장도 집강처럼 각종 실무를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에는 집강이나 면장을 보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를 面差라 했다. 면차에게 준 돈을 羅家稅라고 한 데서 그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면차의 위상은 1908년에 갑자기 높아졌다. 그 이전에는 가끔 소액을 주면서 ‘路資’, ‘求乞別下’, ‘求請別下’ 등으로 기재하다가 1908년부터 2.7냥씩 1년에 두 차례 주면서 ‘羅家稅’라<sup>203)</sup> 칭하기도 했다. 1908년부터는 면장보다 면차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이같이 장흥부의 면 조직은 면임(존위) - 집강[유사] - 면차 체제에서 면장[유사] - 면차 체제로 바뀌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존위는 군포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는데, 그의 위상이 집강보다 높았음을 감안하면 각종 부세를 동별로 분배할 때 각 동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 『南面補民稷節目』“一 講信之日 或有稷錢拒納者 卽爲報官嚴治後捧上 而別有司中 若有身死者 該面執綱以他勤幹富實人 擇定報來 以爲填代是齊.”

202) 『南面補民稷節目』“一 稷錢捧上之時 有司若拘顏私 本錢與利條不爲捧上 紙上空文欲作分授是去等 面執綱卽爲報來 以爲嚴治捧上是齊.”

203) 『洞中年下記』 戊申年(1908) 11月 20日, 2兩7錢春等面差 羅家稅下.

## 5) 유력자 접대

동중은 민간에 총 220회 돈을 건넸는데, 그중 개인에게 173회(78.6%), 단체에 47회(21.4%)를 주었다. 개인의 거주지는 장흥, 전라도(강진, 해남, 광주, 전주, 沃溝), 경기도, 황해도, 평양 등 여러 곳이었다. 강진, 해남처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이 모산동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천 리 넘게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남녘 외진 마을을 찾는 모습을 쉽게 연상하기 어렵다. 연하기가 없었다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모산동 사람들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에게 34년 동안 173회에 걸쳐 289.27냥을 주었다. 1회 1.67냥, 연평균 5.1회를 건넨 셈이다. 1회 제공한 액수는 적게는 0.1냥에서 많게는 51.5냥에 이른다. 51.5냥의 지출명목이 ‘客費’<sup>204)</sup>로 되어있는 것을 볼 때 그 액수에는 접대비도 포함될 듯하다. 이를 제외하면 22.59냥<sup>205)</sup>이 1인에게 한번 건넨 액수로는 가장 많다. 왜 민간인에게 돈을 건넸을까? 모든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중 일부는 유력자였다. 연하기에는 등장하는 개인의 호칭은 성명[宋俊一], 선달[金先達], 서방[洪書房], 가[申哥], 진사[李進士], 상인[蔡喪人], 급제[鄭及第] 등 다양하다. 개인의 사회적 위상과 그들의 호칭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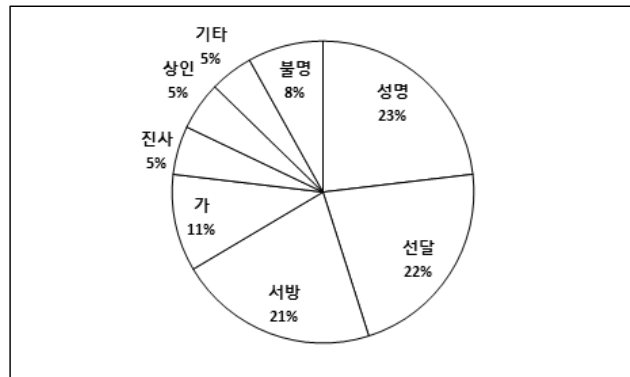
성명을 기재한 사례가 가장 많고, 선달로 호칭되는 사람이 그 뒤를 따른다(〈그림 14〉 참조). 무과급제자 가운데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을 흔히 선달이라 했지만 간혹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그렇게 칭하기도 했다.<sup>206)</sup> 선달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돈을 요구했다. 19세기 후반 장흥을 대표하는 반촌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傍村洞과 鶴橋洞도 선달에게 돈을 건넸다.<sup>207)</sup> 서방으로 호칭된 인물

204) 『洞中年下記』 己酉年(1909) 11月 20日, 51兩5錢客費下.

205) 『洞中年下記』 己酉年(1909) 11月 20日, 22兩5錢9分鄭價求乞下.

20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丙寅年(1866) 十一月大 二十五日 “溫和赤城韓先達性根 自願爲巡撫營軍官 以銃砲多殺洋夷立功 擢爲同副承旨”; 丙寅年(1866) 十二月大 “有韓性根者 素以質鄙人 寓赤城 爲庭試及第 裊勇兼人 當洋亂 自願入申大將觀浩幕下 自當一隊 與賊接戰江華山城 砲殺五十餘衆 成其功 平亂後 自朝家 特措用爲承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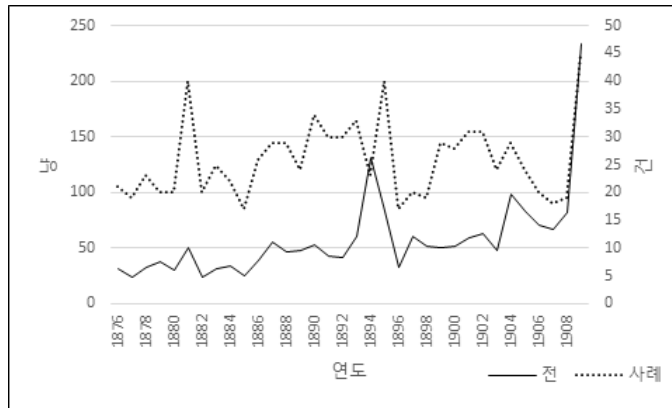
207) 『傍村里大同禊』 甲子年(1864) 12月 15日, 2兩先達條下; 『鶴橋上下契補上記』 癸未年(1883) 11月 15日, “四兩四分泰仁丁先達求乞并下”.



〈그림 14〉 인정을 받은 민간인 호칭(단위: 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모산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서방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이 커진다. 연인원 38명의 거주지를 보면 城内[邑內] 12인, 광주 3인, 경거·경기·전주·장서 각 1인, 불명 9인이다. 읍내에 거주하던 서방들은 향리나 사령 같은 관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사, 선달, 서방 사례로 볼 때 성명으로 호칭된 인물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동중은 吳德伍에게 1881~1898년까지 5번이나 돈을 건넸는데,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동중의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단체에서는 사찰 25회(53.2%), 금고 10회(21.3%)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속, 기관 개인과 달리 사찰과 금고에 대해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흔쾌히 돈을 주었을 것이다.

동중이 관속, 기관, 면중, 개인, 단체 등에 돈을 준 사례는 연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했다(〈그림 15〉 참조). 적을 때는 연간 17회, 많을 때는 45차례 돈을 주었다. 평균 1년에 25.9회 돈을 제공한 셈이다. 금액은 1년에 적게는 23.96냥, 많게는 233.16냥을 지출했는데, 연평균 58.11냥을 제공한 셈이다. 수시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인해 동중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94년과 1909년에 거액을 지출했는데, 그해 작전가를 적용하여 조로 환산하면 각각 9석 15두와 14석 11두가 된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동중을 더 괴롭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인정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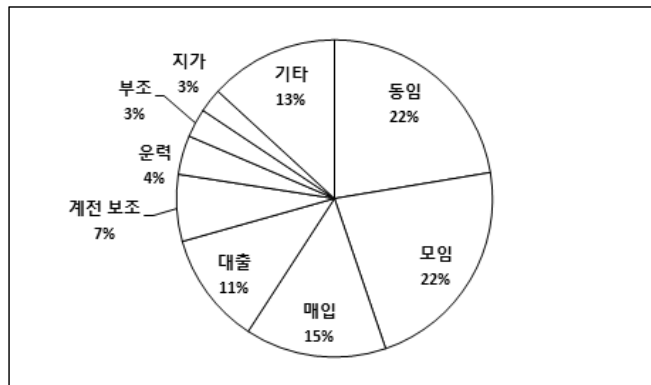
## 5. 동내 지출

동내 지출은 1,149.11냥인데, 이는 동중 총지출액의 12.9%에 해당한다. 동내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항목은 里正, 公事員[知事人] 같은 동임들의 수고비 명목이다(〈그림 16〉 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 동계 공사원이 동중 공사원을 겸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동임들인데, 그들의 업무는 대개 힘들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장흥군 부산면 子美里에서는 다음과 같은 完文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 洞中完議 내, 洞任은 莫重한 苦任이기 때문에 洞案에 올라있는 이름에 따라 차례로 직임을 옮겨가는 뜻으로 이같이 完議를 작성하니, 만약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혹 拒逆하면 錢文 5전을 罰錢으로 納付(해야 됨).<sup>208)</sup>

동임직을 거부한 사람에게 벌전 5전을 부과한다는 완문 내용으로 볼 때 동임이 고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산동에서는 리정에게 1년에 牟

208) 子美洞 『洞中大同稷冊』 『完文』, “吾洞中完議內 洞任莫重苦任乙仍于 洞案名字下次次移任之意 如是完議爲去乎 若當其矣名字下次 或有拒逆 則錢文伍錢 以爲罰納口口口.” 동자료는 이용기 교수가 제공한 것이다.



〈그림 16〉 동내 지출 내역(단위: 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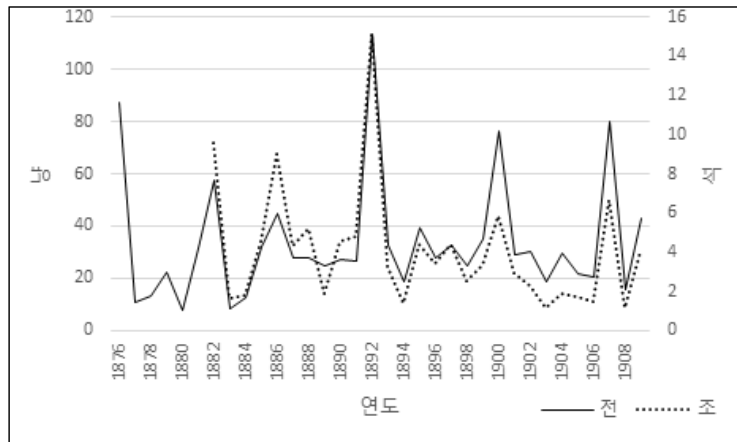
10두와租 10두 혹은 조 20두 또는 전 2냥을 나가세 명목으로 주었다. 그런데 리정 나가세는 1887년까지만 동중에서 지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동계에서 지급했다.<sup>209)</sup> 그리고 동중은 1884년부터 매년 공사원에게 2냥씩 ‘別下’하다가 1890년부터는 그 액수를 10냥으로 늘렸다. 한편 동계에서는 공사원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동중과 동계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던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중은 모임 경비로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 동중은 연말에 동회와 동계강신을 같은 곳에서 연이어 열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동회’라 하기도 하고 ‘계회’라 하기도 했다.<sup>210)</sup> 연말 총회 때 참석자들은 쌀밥, 닭요리, 술 등이 놓인 상을 받았다. 한식, 추석, 복, 제야 모임 때도 흥겹게 술을 마시며 보냈다. 한편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도 모였다. 동포, 환곡, 후목 등과 같은 ‘洞稅’ 분배 때도 술로 긴장감을 풀었다.

遮日, 轎子, 金鼓, 동답 등과 같은 洞物 구입비도 꽤 되었다. 동중은 주민들에게 간혹 대부[價給]도 했는데,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sup>211)</sup> 동중은 6차례

209) 김건태, 앞의 『19세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210) 연하기는 연도에 따라 동회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계회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한 해에 동회와 계회 비용을 모두 지출한 사례는 1899년이 유일한데, 그해에는 무슨 사연이 있어 총회를 두 번 개최한 것 같다. 1885년에는 동회를 두 번 개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17〉 동내 지출액 추이

에 걸쳐 131.52냥을 대부했는데, 그중 1건만 회수했다. 한편 대체로 동중은 동계를 비롯한 여러 계에서 돈을 이전받았지만 그 계가 재정압박을 받을 경우 금전 지원을 하기도 했다.<sup>212)</sup> 동내에 초상이 났을 때는 종이 혹은 술을 보냈다. 1회 부의금은 1897년까지는 대체로 0.3냥, 1898~1908년까지는 0.5냥, 1909년에는 1냥을 보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내 지출은 대부분 분배[소비]와 관련된 지출이다. 이와 달리 윤력 때 지출한 돈은 생산[수입]과 관계된 것이다. 1879·1880·1885·1893년에 泆役, 洞番役, 溝役 명목으로 4.01냥을 지출했다. 이같이 동중은 동답에 물을 대기 위한 보작업에 소액을 지출했다. 조선후기 보의 신설,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작업은 오롯이 그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경작자들의 몫이었다. 즉 동민들이 경작하던 모든 경작지의 관개시설을 동중이 관리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동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파종, 제초, 수확]과 관련된 지출은 없었다. 한편 1889·1890·1901·1902·1909년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村井 보수에

211) 다음 대출 1건만 회수했다. 『洞中年下記』 丙子年(1876) 3月, 24兩各家債付 …… 7月, 各家債付24兩(入).

212) 『洞中年下記』 庚子年(1900) 11月 20日, 60兩劃給於臥還契册爲遣; 『亭子契[臥還契]傳掌記』 庚子年(1900) 11月 20日, 年下劃來錢60兩 60兩金漢九所逋 故27兩2錢4分限三年賭租價捧入次除 32兩7錢6分減給.

41.68냥을 지출했다. 분배[부세, 잡세, 인정, 위의 동내 지출]와 관련된 지출과 비교하면 복지[환경개선]를 위한 지출 또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중은 나가세, 각종 모임 비용 등과 같은 통상적인 동내 지출비를 연간 30냥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7〉 참조). 지출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1876년 대출 78.53냥, 1882년 구체적 명목을 밝히지 않은 잡비 47.3냥, 1892년 遮日 마련비 49.15냥, 1900년 와환계 보조 60냥, 1907년 차일 중수비 61.24냥이 든 해이다.

## 6. 결론

19세기 후반 모산동은 인두세에 해당하는 부세 대부분을 공동으로 납부했다. 동중이 각종 지출에 대비해서 동민들로부터 재화를 수합할 때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세밀히 따졌다. 정부가 均稅를 실현하려고 고민했던 것처럼 동중도 동민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애썼다. 그 결과 동중은 큰 어려움 없이 동민들로부터 각종 재화를 수합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높은 수준의 마을 자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공동납 체제가 활성화됨으로써 동중을 압박하는 힘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 이전에는 군현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해 면중까지 상대해야 했다. 따라서 공동납 체제는 그 이전의 '개인납' 체제에 비해 더 정교한 수취체제라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모산동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부 압력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갔다. 정규세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무명잡세가 불시에 떨어졌다. 그리고 여러 기관, 다양한 관속, 원근의 유력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동중을 괴롭혔다. 그때마다 동중은 돈으로 그들을 달래 돌려보냈다. 이렇게 동중이 외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관[국가]은 팔짱만 끼고 쳐다만 볼 뿐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이같이 동중은 외풍을 견디느라 진이 빠져 내부를 돌아볼 힘이 없었다. 19세기 동중이 구현한 높은 수준의 자치는 오직 외부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다. 동중은 생산과 관련된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일손이 부족한 집안의 모 내기나 제초작업에 윤력군을 언제, 얼마나 투입할지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러한 문제는 일손이 부족한 집과 윤력군들이 알아서 조정할 문제라 생각했다. 동중은 어떻게 하면 동민이 더 부유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재화를 거두기에만 급급했다. 정확히 말하면 동중은 증산을 위해 동민을 독려할 힘이 없었다. 중앙정부, 군현, 면중 그 누구도 동중에 그런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19세기 마을 자치는 중세 장원이나 에도시대 무라의 자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세기 조선의 동중이 분배만 신경 썼다면 장원과 무라는 분배와 생산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공동납체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부도 바꾸었다. 공동납과 관련된 기본 부세대장은 호적이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수를 근거로 각종 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정부는 호적에 등재된 戶를 동질적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모든 주호가 유학을 칭하고 모든 호에 노비 1명을 두는 체제로 호적을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공동납체제에서는 동민들이 공동으로 납부 책임을 지는 만큼 정부는 그들을 동질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공동납 체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이념 공제도 멈추지 않았다. 16~17세기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삼시간에 사라졌던 향약이 19세기 중후반에 활화산처럼 번져나갔다. 향약 확산은 바로 공동납 활성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향약의 4대 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 의미하는 바로 均分이다. 이웃이 부세부담에 허덕이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한편 향약의 덕목 어디에도 增産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증산은 오롯이 인민 스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주제어 : 공동납, 인두세, 균세, 마을 자치, 부세

투고일(2021. 7. 27), 심사시작일(2021. 8. 2), 심사완료일(2021. 8. 18)

〈Abstract〉

## Joint Tax Payment and Community Autonomy in 19th century

Kim, Kuentae \*

In the late 19th century, Mosan-dong jointly paid most of the prefecture tax, which is a poll tax. When the village collected goods from the villagers in preparation for various expenses, their economic ability was carefully considered. Just as the government struggled to realize equal taxation, villages also tried to keep villagers from being dissatisfied. As a result, the village was able to collect various goods from villagers without much difficulties. And a high level of community autonomy was realized in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joint tax payment system was activated, the force pressing the village became much stronger than before. Before that, it only had to deal with Gunhyeon, middle level of administrative district, but now you have to deal with Myeonjung,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 in addition to that. Therefore, the joint tax payment system can be said to be a more sophisticated taxation system than the previous 'individual tax payment' system. Mosan-dong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was always in tension due to unforeseen external pressures. Not only regular taxes, but also lots of unknown miscellaneous charges were suddenly imposed. And various institutions, various officials, and influential people from far and near came from time to time to harass the village. Each time the village appeased them with money and sent them back. As such, when the village was being bullied from the outside, the government [the country] just stood by and did not come up with any solution.

Like this, the village was exhausted from enduring external harassment and had no strength to take a look inside. The high level of autonomy realized by the village in the 19th century was only to prepare for external demands. The village did not discuss anything related to production.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when and how much villagers would be put into rice planting or weeding work in a house that lacks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power. The village considered that such problems were issues that the home and villagers, who lacked manpower, would take care of themselves. The village didn't think deeply about how villagers could get wealthy. The village only cared about collecting enough goods to cover the necessary expenses. To be precise, the village had no power to encourage villagers to increase production. This was because no on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Gunhyeon, or Myeonjung gave such power to the village. Village autonomy in the 19th century was different from the autonomy of a medieval manor or a Mura in the Edo period. In the 19th century, villages in Joseon only cared about distribution, but manor and Mura discussed distribution and production together.

The government also changed accounts so that the joint tax payment system can operate smoothly. The basic prefecture tax ledger related to joint tax payment was the family register. Various prefecture taxes were impos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s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er. Therefore, the government tried to make 'Ho(house)'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er homogeneous. It was recommended that all heads of family be called Yuhak, and a family register should be filled out with one slave in every house. In the joint tax payment system, as villagers were jointly responsible for payment, the government needed to make villagers homogeneous.

The government continued its ideological campaign to ensure that the joint tax payment system can be operated smoothly. Hyangyak, which appeared and disappeared quickl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spread like an active volcano in the mid to late 19th century. The spread of Hyangyak was directly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joint tax payment. The four virtues of Hyangyak are: Good things encourage each other(德業相勸), Rebuke each other for wrongdoing(過失相規), We must be polite when socializing with each other(禮俗相交), Help each other in disasters and difficulties(患難相恤), and it means dividing equally. This sounded like a saying that if a neighbor is struggling with the tax burden, you should help o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thing related to increased production anywhere in the virtues of Hyangyak. Increasing production was a task that the people had to achieve on their own.

**Key Words** : joint tax payment, poll tax, equal taxation, community autonomy, prefecture tax